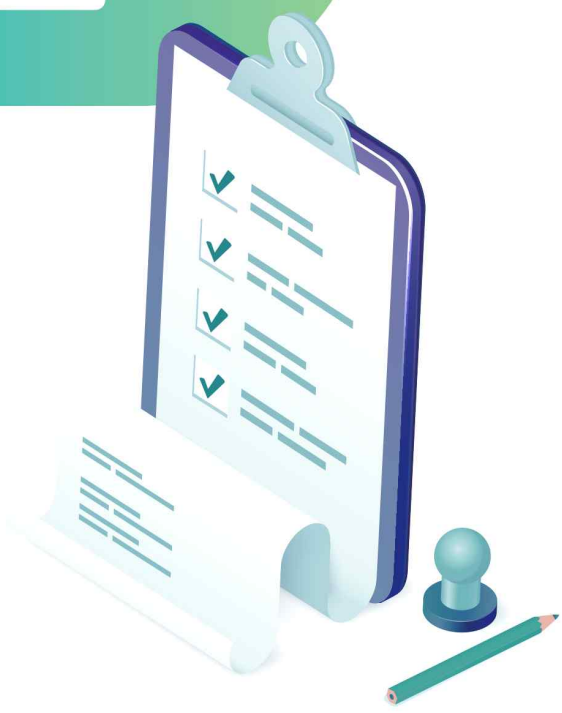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4 - 제3호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1.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현황(행정안전부) ····· 1

2.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 3

3.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발표(보건복지부) ····· 9

4. 보전산지 해제권한 지자체 위임(산림청) ····· 12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14

6.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관계부처 합동) ····· 16

7.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교육부) ····· 21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

1. '플라스틱 대체 빨대' 구입비 지원(서울시) ····· 27

2.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경상남도) ····· 29

3.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서울시) ····· 31

4.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경기도) ····· 33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간이 아니라 효율이 관건 (포스코경영연구원) ····· 37
2. 기존 수소 정책의 점검과 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40
3.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42
4. 전통시장 청년몰, 실패의 경험과 발전모델 탐색 (경기연구원) ····· 45
5.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 49
6.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 57
7.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국회입법조사처) ····· 62
8. 위기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5
9.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국토연구원) ····· 72
10.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 74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종료예정사업의 중도포기자 및 대체 채용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 79
2.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재검토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 83
3.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의 지원 규모 재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86

Ⅴ. 기타 참고자료

1. 공무원 악성민원 대응 관련 동향 (나라살림 연구소) ····· 93
2. 2023 공직생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97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1.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현황 (행정안전부)

◇ 회의 실적 저조·비효율 운영 지자체 1,362개 → 폐지·통폐합 671개 등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7.6., '23.6.26.)

2 추진배경

○ 정부 국정과제 추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

○ 과감한 위원회 정비를 통한 예산 절감, 행정 낭비 및 비효율 개선

3 주요내용

○ 행안부,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 목표** 수립 및 지자체 하달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목표연도 : '22년 ~ '27년)
- 매월 전체 지자체 대상 정비실적 점검 등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 정비**

*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

<지자체 위원회 정비실적> ('22.5.~'23.12.)

구 분	주요 내용
정비 유형별 위원회 수	• (폐지·통폐합) 671개 • (협의체 전환) 28개 • (비상설화) 651개 • (존속기한 명시) 12개
시도·시군구 정비 위원회 수	• (시도) 388개 (평균 22.8개) • (시군구) 974개 (평균 4.3개)

*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로 전환

○ 지난 5년('17년 ~ '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 (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2년 말 2,8652개에서 '23년 말 28,199개로 453개 감소**

* ('17) 23,500개 → ('18) 24,874개 (5.8% ↑) → ('19) 26,395개 (6.1% ↑) → ('20) 28,071개 (6.3% ↑) → ('21) 28,621개 (2.0% ↑) → ('22) 28,652개 (0.1% ↑) → ('23) 28,199개 (△1.6%)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 행안부,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하여 통폐합 등 진행

* 지방재정법, 기부금품법, 수산자원관리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조예찰·예보요령

○ 앞으로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

○ 또한,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 적극 추진 예정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 ('23.12.31.기준) 171개 위원회 운영 ('23.1.30., 162개 대비 5.6%↑)

* '22.1.31.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자료 ↔ 자치행정과-105(위원회 정비결과) 대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위원회 운영 현황> ('23.12.31.기준)

구 분	내 용
최상위 근거 법규 유형	법령 근거 97개, 조례 근거 74개
상설 여부	상설 151개, 비상설 20개
회의 미개최 위원회	('21) 30개 ('22) 27개 ('23) 33개 ※ 연간 총 0건 또는 서면이나 대면 중 1회만 개최 기준
위원회 성격	심의의결 146개, 자문 25개

○ 도(자치행정과) 주관, 각 시군의 월별 위원회 정비결과를 종합하여 행안부(자치분권제도과)에 보고하고 있음

《제언》

· 불필요 위원회·기능 유사 위원회 등은 시책 일몰제와 위원회 정비 노력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제한하는 장치는 자구적 노력 외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특히, **조례 제정시** 위원회의 필요성과 효율성, 기능 수행 측면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무조건적으로 설치 및 운영 조항을 포함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안건 심의 시 이러한 부분을 적극 논의해야 하겠음

2.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쌀가공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

1 현황 및 한계

○ (현황) '22년 **쌀 가공산업 매출액은 8.4조원, 쌀 소비량은 약 57만톤**으로 '17년 대비 각각 3.5조원(연평균 11.4%), 8만톤(연평균 3.1%) 증가

- 즉석밥, 도시락 등 가공밥류와 떡볶이 등 떡류 시장은 수출 증가 등에 따라 꾸준히 성장한 반면, 주류, 과자류, 면류 등은 최근 정체

  * 쌀 가공제품 수출액 : ('17) 72천불 → ('22) 181천불, 250%↑

- **'23년 가루쌀 산업 본격 육성으로 쌀 가공산업에 새로운 활력 창출**

○ (한계) 가공용쌀 사용의 정부양곡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영세한 기업 구조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시장개척, 소비트렌드 대응에 한계

- 민간 쌀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수출 등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마케팅 지원이 미흡

2 기본 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가루쌀 생태계 조성·수출 확대** 등 시장 다각화로 쌀 소비기반 확충 추진

  * 국내 시장규모(조원) : ('17) 4.9 → ('19) 7.2 → ('21) 7.5 → ('22) 8.4
  * 수출규모(백만$) : ('17) 72 → ('19) 108 → ('21) 164 → ('22) 182

- 가루쌀을 중심으로 **유망시장을 육성**하여 수입밀·수입쌀 시장을 대체하고, **신제품 개발, 제도기반 정비** 등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목표)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견인하고 국내·외 시장 다각화로 쌀 소비기반을 확충

- [시장확대] **매출액: ('22) 8.4조원 → ('28) 17조원** (연 12.0%↑)
- [수급균형] **쌀 소비량(주정용 제외): ('22) 57만톤 → ('28) 72** (연 4%↑)
- [수출강화] **수출액: ('22) 180백만$ → ('28) 400** (연 14%↑)

3 주요 내용

○ **(유망품목 집중 육성) 4대 전략 10대 유망 품목에 집중 지원**하여 2028년 쌀 가공산업 매출액 17조원 및 수출액 4억 달러 달성 견인

<table>
<tr><th></th><th colspan="5">4대 전략 및 10대 유망품목 육성</th></tr>
<tr><td>4대
전략</td><td colspan="5">1. Simple & Easy : 다양한 쌀 간편식품 시장 확대(간편 가공밥, 냉동떡 등)
2. Healthy : 쌀의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한 글루텐프리, 비건, 고령친화식품 등 육성
3. Global : K-Food 수출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 (냉동김밥, 떡볶이 등)
4. New-tro : 전통에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새로운 제품 발굴(쌀 증류주, 약과 등)</td></tr>
<tr><td rowspan="2">10대
품목</td><td>가공밥·죽류
* 목표(십억원)
('22) 2,187 → ('28) 4,387</td><td>떡류
* 목표(십억원)
('22) 2,317 → ('28) 4,537</td><td>주류·음료
* 목표(십억원)
('22) 1,718 → ('28) 3,391</td><td>면류
* 목표(십억원)
('22) 113 → ('28) 476</td><td>빵·과자류
* 목표(십억원)
('22) 231 → ('28) 974</td></tr>
<tr><td>① 간편 가공밥죽
② 도시락·김밥</td><td>③ 떡볶이
④ 냉동떡</td><td>⑤ 쌀 증류주
⑥ 쌀 음료</td><td>⑦ 쌀국수
⑧ 혼합면</td><td>⑨ 쌀빵
⑩ 쌀과자</td></tr>
<tr><td>주요
수단</td><td colspan="5">▸ 식품·유통업계와 연계한 품목별 특화 홍보·마케팅 추진
▸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으로 쌀가공식품 품질 및 인지도 제고
▸ 해외소비자 대상 K-Culture(K-Pop, 예능·드라마) 연계 판촉으로 국외판로 확대
▸ 업계 수요를 반영한 쌀 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R&D 추진
▸ 가루쌀 등 가공용 쌀의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강화
▸ 육성자금 확대 및 시설·경영 개선 지원으로 업체의 재투자 여건 개선</td></tr>
</table>

○ **(가루쌀 산업육성)**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 20만 톤으로 전환, 쌀가공식품 중 수요 진작이 필요한 **면·빵·과자류** 중심의 제품화 지원

- **(제품화)** 가루쌀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연구개발, 소비자 평가 등 **제품화 전과정을 지원**하여 **수입 원료 대체 시장 확대**

  * 제품화 참여기업: ('23) 15개 → ('24) 30 → ('25) 35 → ('26) 40 → ('27) 45

- **(제분·유통)** 면류·빵류·과자류 등 제품군별 가공적성에 맞는 **제분기술*** 개발('24~'25), 가루쌀 원료에 대한 **품질기준(KS)** 마련('26)

  * 제품군별로 적합한 회분 함량, 입자 크기, 색깔 등 기준 마련 및 제분기술 개발

- **(계약재배)** RPC·식품업체에게 **원료매입*** 자금지원, 계약재배 농업인에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검토
- **(소비기반)** 카페·베이커리 등 외식업계 및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판매기획전**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가루쌀 제품 지속 노출
- **(품종)** 수량성·재배안정성 등이 개선된 **가루쌀 계통**을 육성하고,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보급종 종자** 생산·공급 체계 운영

* 품종 육성목표: ('25) 산패·수발아 저감, ('27) 내수발아, ('28) 수량성 향상

** 보급종 공급계획: ('24) 600톤 → ('25) 950톤 → ('26) 2,526톤

○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 해외 유명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10배 확대**('23, 3개소 → '28, 30개소), 국내 글루텐프리 인증(KGFC) 인증기업 **100개 육성**('23, 8개소 → '28, 100개소)

○ **(수출 확대)** 쌀가공식품의 수출을 선도할 **대표기업을 200개로 확대**

○ **(구매 접점·경험 증대)** 쌀가공식품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유통망 확대

○ **(원료공급)** 안정적인 원료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가공용 쌀 **민간 조달**을 활성화하고 **정부양곡**의 공급 예측가능성 및 품질 제고

○ **(R&D)** 가루쌀 육성 기반기술, 수출 시 품질유지 기술 등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선정 및 R&D 지원('24~)

○ **(시설·경영)** 자금지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보 제공)** 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규모, 동향, 소비자 인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DB화, 통계생산·활용 기반 정비로 활용도 제고

○ **(제도정비)** 국내외 특수 시장과 수출을 겨냥하는 국내 식품업체 대상 **식품 인증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 정비 추진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6년까지 20만 톤의 가루쌀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지난해 **전북자치도 가루쌀 재배면적**은 17개 단지에 780ha로 전국 2,000ha의 39%로 **최대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24년 재배단지를 1만ha로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전북자치도의 재배면적도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됨

* 농림식품부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계획: ('23) 2천ha → ('24p) 10 → ('25p) 15.8 → ('26p) 42.1

○ 또한 쌀수급 안정을 위하여 '24년부터 **가루쌀의 전략작물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에 200만원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함

○ 지난해 가루쌀 재배 시 종자공급가격, 이양시기, 병해충, 출수시기, 비료살포 등에서 겪은 문제점을 토대로 농업기술원의 재배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교육 및 지도가 필요**함

* 바로미2를 일반벼(메벼) 가격으로 할인 공급

구분	원가	공급가	할인액	비고(일반벼)*
원/kg	3,178	2,454	724	메벼 2,454원/kg, 찰벼 2,535.5/원/kg
원/대·20kg	63,560	49,080	14,480	메벼 49,080원/대, 찰벼 50,709원/대

○ 가루쌀 제품화 25개 업체 선정을 목표로 하는 ''24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176개 업체가 신청해 7대 1의 높은 사업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대부분 대기업들이 선정되었음

< '24년 가루쌀 제품화지원사업 선정기업(: '23년 참여기업) >

구분		선정기업
식품 기업 (25개)	면류	**농심** 볶음면, **삼양식품** 유탕라면, **농협경제지주** 쌀국수, **하림산업** 컵라면 등, **미듬** 소면, **교동식품** 냉면·짜장면·칼국수 등,
	빵류	**SPC삼립** 와플·파운드 등, **성심당** 마들렌 등, **미듬** 카스테라 등, **홍두당** 비건빵 등, **그레닉스** 케이크, **엠즈베이커리** 휘낭시에, **유동부** 식빵·모닝빵
	과자류	**오뚜기라면** 유탕면스낵, **엠즈베이커리** 마들렌 등 5종, **청원생명** 시리얼 등 5종, **볼드인터내셔널** 롤과자, **한울푸드** 영유아스낵, **유동부** 브라우니 등, **쿠키아** 두부과자
	프리믹스	**사조동아원** 부침가루, **농협경제지주** 부침가루·튀김가루, **대두식품** 제빵 프리믹스, **삼양사** 치킨튀김가루 등, **에버헬스케어** 부침가루·치킨튀김가루,
	기타	**신세계푸드** 라이스밀크, **삼양식품** 냉동만두·냉동치킨, **샘표** 고추장, **태향** 시럽 등, **강봉석조청** 조청, **볼드인터내셔널** 유산균 오트밀
외식기업 (5개)		**파리바게뜨** 식빵·모닝빵 등, **뚜레쥬르** 케이크시트 등, **피자알볼로** 피자도우·치즈볼 등, **런던베이글** 베이글, **와플대학** 와플믹스

○ 향후 익산 식품클러스터 입주 업체를 통한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가루쌀 가공업체 입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별첨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3.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발표 (보건복지부)

◇ **'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82%, 경인지역 18% 신규 정원 배치를 통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1 추진배경

○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 수도관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및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

2 주요내용

○ (배정기준)

-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 우선 배정 및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

*①인구 천 명당 의사 수('23년) : 서울 3.61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 vs 경기 1.80명, 인천 1.89명
②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23년) : 서울 약 0.9명 vs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

- 권역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의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여 배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 제고

연구결과 **지역 의료인력 확보 위해 지역 경험 축적 기회 제공 필요**

➠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전문의 수련 지역**과 **지역 근무**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음

「**의사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22.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① 출신지역 비수도권 광역시·도 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2.33배, 2.43배** ↑
② 의대 졸업지역 비수도권 광역시·도 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2.12배, 2.01배** ↑
③ 전문의 수련지역 비수도권 광역시·도 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12.41배, 5.94배** ↑

-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 및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
  단,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 배치 제외

○ (배정결과)

-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 361명(증원 인원의 18%)이 경인 지역에 신규 배정,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증원 인원의 82%) 신규 배정됨
-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

<< 시사점 >> **[관계부서 : 보건의료과]**

1 의대정원 배정 확대로 의료 개혁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전북자치도의 필수 및 지역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2 전북지역의 내년 의대 정원이 올해 235명에서 350명으로 확대됨에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 증원) 따라, 양질의 교육을 위한 대학의 인프라 확충 및 교수 증원 등 후속 처리에 철저

3 지역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증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의무복무를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병행되어야 함. 4월부터 외래진료 축소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추가 예고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상황실 운영 등 상황을 주시하며 도민들이 겪을 혼란 및 의료피해 최소화

별첨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24.03.20.)

지역		대학명	현정원	신청	배정	'25학년도 정원
수도권	서울	서울대	135	365		135
		경희대	110			110
		연세대	110			110
		한양대	110			110
		고려대	106			106
		가톨릭대	93			93
		중앙대	86			86
		이화여대	76			76
	서울		826	365	0	826
	경기	성균관대	40	565	80	120
		아주대	40		80	120
		차의과대	40		40	80
	인천	인하대	49		71	120
		가천대	40		90	130
	경기·인천		209	565	361	570
	수도권 소계		1,035	930	361	1,396
비수도권	강원	강원대	49	2,471	83	132
		연세대 분교	93		7	100
		한림대	76		24	100
		가톨릭관동대	49		51	100
	경북	동국대 분교	49		71	120
	대구	경북대	110		90	200
		계명대	76		44	120
		영남대	76		44	120
		대구가톨릭대	40		40	80
	경남	경상국립대	76		124	200
	부산	부산대	125		75	200
		인제대	93		7	100
		고신대	76		24	100
		동아대	49		51	100
	울산	울산대	40		80	120
	전북	**전북대**	**142**		**58**	**200**
		원광대	**93**		**57**	**150**
	광주	전남대	125		75	200
		조선대	125		25	150
	제주	제주대	40		60	100
	충남	순천향대	93		57	150
		단국대(천안)	40		80	120
	충북	충북대	49		151	200
		건국대 분교	40		60	100
	대전	충남대	110		90	200
		건양대	49		51	100
		을지대	40		60	100
	비수도권 소계		2,023	2,471	1,639	3,662
합계			3,058	3,401	2,000	5,058

4.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자체 위임 (산림청)

◇ 3만㎡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 자율성 강화

1 추진배경

○ 현행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움

○ 해제 권한이 산림청에 있어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어 개발이 거의 불가능해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필요성 제기

2 기대효과

○ 산림청에서 관리하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한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 가능

3 주요내용

○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산지**(6,345,245만㎡) 구분비율 :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 (1,352,418만㎡)

**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산림자원 조성, 임업경영 기반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에 활용)와 **공익용산지**(임업생산, 재해방지, 생태계 보호, 국민보건 휴양증진 등 공익기능에 활용)로 구분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함

-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 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됨

4 분석의견 (관계부서 : 산림녹지과)

○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규제완화, 산림문화·휴양·복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육성 등 **특례 조항을 활용한 사업 개발 필요**

별첨 산지 이용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안)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1 추진배경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임

○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 줄 필요성이 시급하고 중요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주택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가입하고 보증기간내 지원 신청한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조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준)

  ※ ('23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 ('24년부터) 전연령 확대 시행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청년, 신혼부부) 최대 30만원 / (청년 외) 보증료 90%(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기대효과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취약계층 및 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함

○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주택건축과)

○ 전북자치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전북특별자치도 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23.12.29.부터 시행됨

○ 2024년도 전북자치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계획

< 전북자치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계획 개요 >

▸ 사업기간 : '24. 3. 4. ~ 12. 31. *신청시기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3,334가구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150, 시군비 350)

※ '24년본예산 78백만원(국비39, 도비12, 시군비27)

→ 국비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은 **추경확보를 통해 지원(도 5월 예정)**

(단위: 가구)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334	1,166	466	500	200	167	167	167	67	67	33	67	67	100	100

○ 전북자치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으로 도내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홍보 및 독려가 필요함

6.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

1 추진배경

○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은 가중

-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 체감경기회복 지연 및 고금리 영향 가중으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

* 대출규모(조원, 한국은행) : ('19) 686 → ('20) 784 → ('21) 909 → ('22) 1,019 → ('23.3Q) 1,052

** 연체율(%, 한국은행) : ('19)0.79 → ('20) 0.56 → ('21) 0.53 → ('22) 0.69 → ('23.3Q) 1.24

- 원자재·재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상승과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경영비용 부담도 상당

* 경영 부담 요인('23 중기중앙회, %) : 원자재·재료비 상승(33.8), 인력수급(21.8), 대출부담(18.3)
전기요금 (원/kWh) : ('19) 105.7 → ('21) 100.7 → ('23.11) 132.4

○ 소상공인·중소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상존

- 기술탈취, 갑질행위 등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중소·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및 보호 필요성 높음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전통시장의 상생 등 대·중소 상생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할 필요

○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지역 중소기업 중심으로 인력난 여전히 지속,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ESG 대응에 대한 지원 요구 상당

2 주요 내용

❶ 함께 줄이는 부담

○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 경감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 40%까지 지원

○ **저금리 대환대출(1.5만명)**과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명)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

-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월 26일부터 지원**
-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

○ **지역신보 1조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7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2만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 지원

-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0.04%→0.07%)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 추가 공급
-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7조원 규모 정책자금 공급**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까지 상향**

○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여행(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 추진

○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상표(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여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 회복

○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 위기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

○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❷ 함께 만드는 환경

○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 추진

-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 지원

○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

❸ 함께 키우는 미래

○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 글로벌기금(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성장 전환 국면(모멘텀) 확충

○ **한국형 스테이션-에프(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세계(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세계화(글로벌화)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

○ **도전적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세계(**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을 **강화**

3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1. 함께 줄이는 경영부담		
1 경영부담 경감		
▶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신청 접수	'24.2.21~
▶ 고금리 대환대출	접수 및 지원	'24.2.26~
▶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개시	(은행권) '24.2.5~ (중소금융권) '24.3.29~ ※ 집행개시일 기준
▶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24.2월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24.2월
2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가맹점 확대	5조원 발행 완료/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24.1월~
▶ 해외 우수전통시장 마케팅 프로그램	해외 탐방추진 계획 수립	'24.3월
▶ 노후점포 시설개선 및 화재안전 지원	매대, 간판 개선, 화재안전지침 개정 등	'24.4월~
▶ 지역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지역상권법 개정	'24.하
3 사회안전망 확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공고 및 수시 접수	'24.1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절차 간소화	고시 등 개정, 신청·접수 시스템 개선	'24.6월
▶ 노란우산공제 개편(중간정산, 과세 등)	협동조합법시행령/조특법시행령 개정	'24.6월/'24.2월
▶ 간이회생절차 간소화	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24.상
2. 함께 만드는 기업 환경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자영업자 관련 3법 시행령 개정	청소년보호법·식품법·담배법 시행령 개정	'24.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법령 정비	전수조사 및 일괄 정비 추진	'24~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인도·베트남 SW인력 매칭, E-9 비자 확대	'24.상~
▶ 기술탈취 사전예방 강화	기술보호 집중지원 시범사업 개시	'24.7월~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 등	기술보호법 고시 개정	'24.7월
▶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	'24년 3분기~
▶ 불공정 피해기업 손해배상 소송 지원	공정거래법 개정	'24년 3분기~
▶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쟁조정제도 개선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하도급법 개정	'24년 3분기~
2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협력		
▶ 원활한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약정체결 지원,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24.상
▶ 납품대금 연동제 탈법행위 적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실시	'24.하
▶ 대형마트 골목상권 상생협력 강화	동반성장평가 지표 신설 등	~'24.12

주요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3. 함께 키우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1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 조성	정부 모태펀드 1.6조원 신속 출자	~'24년 1분기
▶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허용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24.상~
▶ CVC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	'24.하~
▶ 한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	창업지원법 개정	~'24년 1분기
▶ 글로벌TIPS 신설	공고 및 지원 등	'24.상~
▶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조성지 선정 및 건축 설계	~'24.하
▶ 국내·외 선도기업 개방형 혁신 활성화	삼성전자, Open AI 등 협업프로그램 추진	'24~
2 창업·벤처기업 육성		
▶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기술공급기업)	기술공급기업 육성 대책수립	'24.하
▶ 중소기업 녹색전환(GX) 생태계 조성	녹색전환 대책 마련	'24.상
▶ 글로벌 R&D 협력거점 운영	MIT 공동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24.상

4 분석의견

○ 전북자치도는 **'다함께 민생추진단' 회의**를 통하여 현장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특별대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현장 행정 결과 등을 토대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생정책조정회의, 찾아가는 현장정책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민생 현장 살펴볼 필요**가 있음

7.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교육부)

◇ **지차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

1 추진 배경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및 지역 소멸 우려

○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유치 곤란

2 지정 개요

○ **(신청 단위)**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

○ **(지정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 **(지정 규모)**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 **(운영 기간) 3년,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

3 지정 결과

유형	신청단위	신청현황	지정(안)	지자체명
1 유형	기초 지자체	**29건** (30개 기초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 (인천) 강화 -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 (강원) 춘천, 원주, 화천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 (충남) 서산 - (전남) 광양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2 유형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 지역)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 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 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 충남 (아산) - 경북 (안동-예천) -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 미선정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 1차 지정평가를 보완하여 2차 공모 시 재평가 예정

○ **(운영 구분)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하여 선도지역은 3년 시범운영 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 후 성과관리와 지원 실시

* 관리지역은 지정결과 음영표시된 12개 지자체임

4 교육발전특구 운영

○ **(상향식 발전전략)**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 **(타 특구와 연계)** 지방시대 4대 특구, 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

○ **(교육개혁과제 우선 지원)**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한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늘봄학교, 유보통합, 자율형 공립고, 교육의 디지털전환, 학교시설복합화, 협약형 특성화고 등

○ **(재정 지원)** 기존 정책사업 연계 및 **특교·균특회계 등을 통한 지원**

○ **(특례 적용)**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추진**

별첨1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전북 주요 사업 내용

3유형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 **(지역여건) 환황해경제권과 교통의 요충지 등 산업 네트워크 확장 최적화**
▸ **(특징) 지역산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 전문인력양성, 일자리창출 연계**

■ **유보 이음교육** 운영 및 **지역늘봄협의체 구성·운영** 통한 지역 책임 돌봄시스템 구축

- (남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맘행복누리센터-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부안) 학교 밖 늘봄기관 선정 및 마을품 청소년 틈새놀이터 선정·지원

■ 에듀테크 활용 및 미래형 수업혁신을 위한 **전북미래학교** 운영, **IB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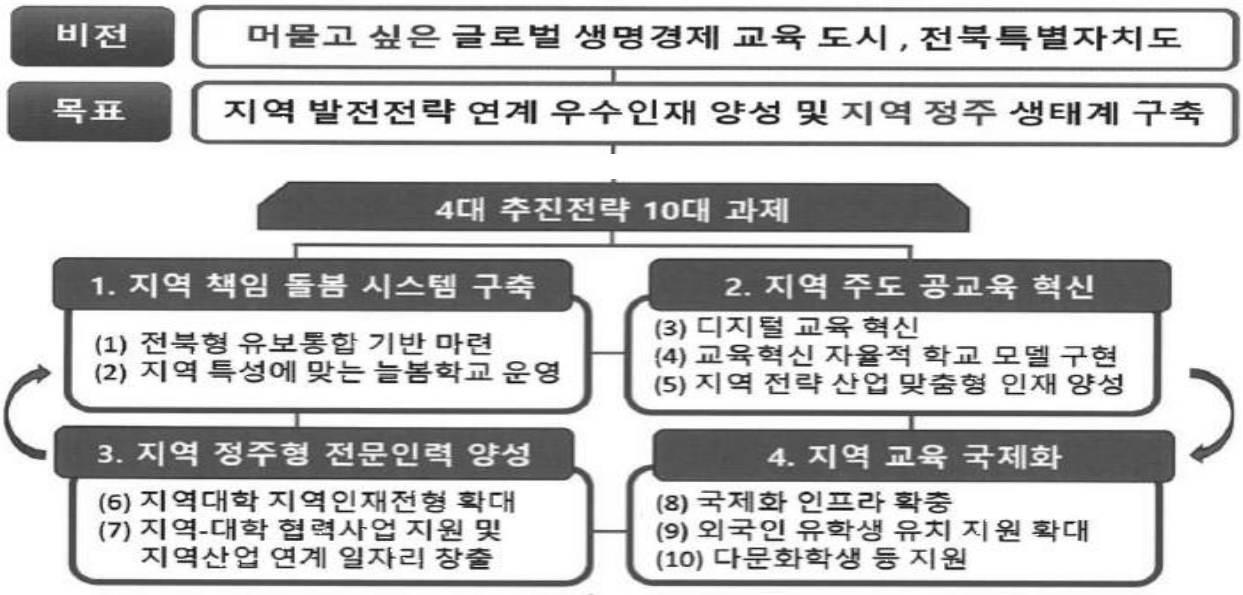
■ **지역특화산업 연계 특성화고 교육과정 재편·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혁신지구 플랫폼** 구축

■ **지역-대학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 (남원) 서남대 폐교부지 활용 드론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 (완주) 이차전지, 에너지 수송 관련 지역 산업체 채용 약정형 학과 개설

■ **해외유학생 유치 국제화 인프라 조성** 및 **다문화 학생 지원**

- 전북특별법(제63조) 외국인 체류자격 등 특례 활용, 유학생 유치·정주유도 위한 주거비 등 지원



별첨2 전북 5개 시·군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비전 및 내용

지역	[비전] 및 내용
익산	**[지역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공공형 보듬 커플링 특구 조성]** ○ 디지털융합 인재 양성 - AI 및 에듀테크 활용 지원 ○ 지역돌봄과 늘봄학교 연계 및 학교복합시설 내 방과후 러닝센터 구축 ○ 생명산업 인재양성 및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 이리공업고(2차전지), 원광보건고(보건분야), 진경여자고(K푸드) ○ 공교육 활성화 및 학생 및 교원 치유 · 힐링 교육
남원	**[글로컬 미래산업 교육도시]** ○ 남원 지역사회 주도 맞춤형 늘봄학교 ○ 드론 및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교육 확대 ○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 연계 외국인 유학생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완주	**[지역 인재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 완주미래행복센터 운영, 전지역 완주어울림버스 교육돌봄노선 구축 ○ 지역산업 연계 전북하이텍고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현대자동차 등) ○ 지역산업 연계 정주지원 행정시스템 혁신
무주	**[태권시티 무주, 무주군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 ○ 태권도 방과후 늘봄교육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학교(학과)구조 개편을 통한 태권도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추진 ○ 지역대학 태권도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부안	**[국산밀 베이커리 교육·산업 특구]** ○ 우리밀 유아놀이실 및 체험실 조성 ○ 전북베이커리고 운영, 우리밀 제과제빵 교육관 조성 ○ 베이커리타운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 채용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1. '플라스틱 대체 빨대' 구입비 지원(서울시)

◇ 소상공인에게 플라스틱 대체 빨대 구입비를 지원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플라스틱 대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단가가 높아 소규모 카페에서는 구입에 부담이 있음

○ 플라스틱 대체 빨대 판매 업체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판매를 촉진하여 친환경 업체 운영 지원을 통한 환경 보호 필요성

2 주요내용

○ (대　　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

○ (구입방법) 협동조합 온라인 홈페이지(http://allcafeowner.com/) 방문

○ (구입개수) 매장별 총 1만개 까지 플라스틱 대체 빨대 구매 지원

○ (지원내용) 개당 약 3원 할인

3 기대효과

○ 8천만 개의 대체 빨대 사용을 유도하여 플라스틱 약 80톤 감축(플라스틱 빨대 1개에 약 1g 가정) 하여 환경 오염 예방

○ 소상공인 매장에서 원활한 대체품으로의 사용 전환을 유도하여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부는 '23.11.7.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일회용품사용제한 관리방안**'을 발표함

< 일회용품사용제한 관리방안('23.11.7.발표) >
▸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 - **(비닐봉투)**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어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 -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 - **(종이컵)**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감 ▸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 식당과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및 4월 30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또한 2년 유예됨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정책 후퇴 및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한 단속이 다소 완화됨

○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기조 변화와는 별개로 일회용품 퇴출을 위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시범 보급하고 지역축제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서비스 도입·시행하고 있음. 또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 4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및 텀블러·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 예정

○ 2024년 말 전 세계 170여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유엔 국제협약이 발의될 예정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처럼 느슨히 대응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자체 차원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마련이 필요함

2.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경상남도)

◇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휴게쉼터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

1 추진배경

○ 휴식공간 확보를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충해소 필요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경남 지역 사업장 중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

○ (지원규모) 최대 1000만 원 이내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휴게쉼터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 (사업기간) 선정일 ~ '24. 11월

※ 사업실적 : '20년부터 현재까지 28개 도내기업에 1억 1천 7백여만원 지원

3 기대효과

○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북자치도는「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시행 중이고, 동 조례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2017.11.17. 조례제정 이후「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제10조에 따라서 도지사가 사용자에게 휴게실 마련을 권고한 바는 없음

3.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서울시)

◇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6개월 거주 요건 폐지를 통해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을 지원함

1 추진배경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 진행

○ 서울에서 출산한 모든 산모들에게 소득기준 평가없이 산후 조리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산모('24. 1. 1.이후) 누구나 (소득기준 없음)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 등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발급 후 6개월 이내) 등

○ (지원방법)

-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https://www.seoulmomcare.com)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건강증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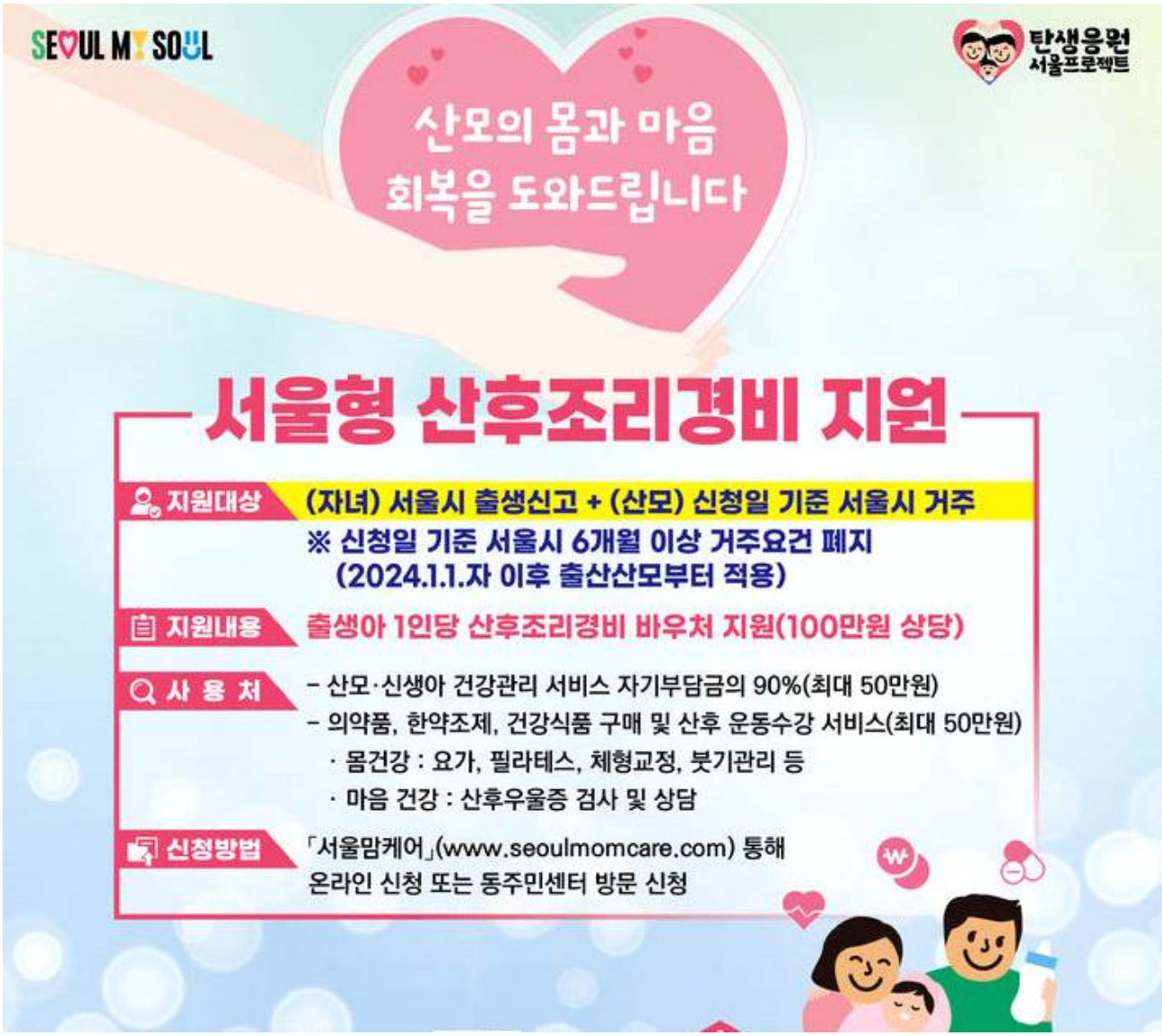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작년 9월 시행 이후 약 1만 5900여명의 산모가 바우처를 신청하며, 산모들의 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됨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울산시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출생아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며,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에서도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함(산후조리원, 소아과 지원 불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 규모 및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임

○ 출산 장려 문화조성을 위해 산후 관리지원 확대, 임산부 택시비 지원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4.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경기도)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이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이내 모두 지원

1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불안을 해소 필요

2 주요내용

○ (대　　상)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매년 약 260명

○ (사업규모) 78가구

○ (예　　산) 8억 3천만원(도민환원기금)

○ (지원내용)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천266만원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

○ (지원방법) ‘24년 하반기부터 위탁기관 선정 후 지원 예정

3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

○ 기존 입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

4 분석의견 (관계부서 : 여성가족과, 지역정책과)

○ 전북자치도는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민간기관과 협약을 맺어 건강검진 실시, 장학금 지원, 법률상담, 자립지원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총 26개 사업 약 176억), '희망디딤돌 센터' 운영을 통해 개별 주거공간을(오피스텔 26호) 제공 중이나, 주거 지원은 부족한 실태임.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한 조례 제정('23.05.)에 따라, 자립지원협의체 운영으로 지속적인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 보완

별첨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간이 아니라 효율이 관건('23.12./포스코경영연구원)

<< 연구요약 >>

◇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 노동시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
◇ 해외에서 진행된 주 4일 근무제 관련 실험은 대체로 긍정적 결과를 도출
◇ 주 4일 근무제의 성공요인은 '시간 단축'이 아닌 '효율성 향상'

□ 연구배경

○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제(주 48시간)가 제정('53.5.)된 이후, 36년이 지난 '89년에 주 44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 4시간 단축

○ 이후 '03년,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다시 4시간이 단축되었으며, '04.7월에 주 5일 근무제 도입

○ 산업혁명을 거듭하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 대두

- 삼성전자, '23.6.23.부터 '월 1회 주 4일 근무제' 시행 선언(생산직 교대근무 제외)
  · 당월 필수 근무 시간을 채우면,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의 금요일은 미출근
  · 엄밀히 따져, '금요 휴무제'는 앞선 4일 동안 2시간씩 더 근무하는 방식
- SK하이닉스와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들도 부분적으로 주 4일제 운영
  * 방식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금요일 8시간 근무를 분산하여 미리 수행
- 카카오게임즈, 토스 등 IT 기반 업체 다수, 부분적으로 주 4일제 또는 4.5일제 채택

□ 주요내용

○ 주 4일 근무제 관련 실험, 대체로 긍정적 결과 도출

- (해외-성공) '15~'19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가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사실 발견

⇒ 근로자 웰빙 관련 지표값 크게 상승, 생산성은 대부분 동일하거나 개선

⇒ 참여 근로자들, 단축된 시간으로 사적 활동 집중할 수 있어 업무성과 향상 답변

- (해외-성공) '22.6월, 영국 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6개월간의 대대적 실험
  ⇒ 다양한 규모의 61개 기업들과 2,900여 명 근로자 참여
  ⇒ 임금은 100% 유지, 근무시간은 80%로 축소하면서 생산성과 능률을 100%로 지속할 수 있는지 파악 목적
  ⇒ 결론 ① 참여 기업의 92%, 근로자의 90%가 지속적 주 4일제 운영 희망
  ② 전년 동기 대비 평균 매출 35% 증가, 이직률 57% 하락
  ③ 참여 근로자의 71%가 번아웃 감소, 39%가 스트레스 감소, 43%가 멘탈 향상, 54%가 부정적 감정 감소 경험 언급
- (해외-성공)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 '19.8월에 전 직원 대상 실험
  ⇒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주말까지 사흘 연속 쉬도록 하되, 임금은 유지
  ⇒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92.1%가 주 4일제 정책과 제도에 만족 응답
  ⇒ 제도 시행 이후, 인당 매출 39.9% 증가, 전기 사용량 23.1% 감소, 서류 출력 및 복사 횟수 58.7% 감소 등 비용 절감 효과 발생
- (해외-실패) 스페인 통신회사 텔레포니카, '21.10월부터 주 4일 근무제 시작
  ⇒ 가장 큰 실패 원인 : 제도 참여 희망자의 임금을 15% 삭감한다는 규정
  ⇒ 지원율이 0.75%로 매우 저조했음 (직원 2만여 명 중 150여 명만 지원)
- (해외-실패) 프랑스, '98년에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초과근무는 연간 13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도입 실험
  ⇒ '98년 당시, 국가 차원에서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는데 초점
  ⇒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줄면 기업이 추가 고용을 한다는 어설픈 가정
  ⇒ 당시 프랑스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은 단축되지 못했고, 실업률 또한 미개선

※ (국내)

- 대한민국, OECD 회원국 평균 기준 임금 근로자 근로시간 대비 월 13시간↑ ('23.기준)
-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근로자 요구 등으로 주 4일제가 노동계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
- ('21) 한국리서치, 시민 1000명 대상 주 4일제 찬성 응답률 51%
- ('24) 엠브레인, 임금 노동자 300명 대상 주 4일제 찬성 응답률 67%

○ 주 4일 근무제의 성공요인 : '시간 단축'이 아닌, '효율성 향상'

- (스페인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듯) 주 4일 근무제를 임금 삭감과 함께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
- 가장 큰 장애요인 : '근로시간 단축 = 생산성 하락'이라는 고정관념
  * ('17. KDI) 근로시간단축정책 시행 이후 노동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 1.5% 상승
- 주 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많은 우려, 결과적으론 안정적 정착
  *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손실을 업무 효율성으로 복구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초점
- 결국, 주 4일 근무제 성공여부는 '시간'이 아니라 '효율성'에 있음
  *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 필요

<< 시사점 >>

1 주 4일제 도입 찬성 비율이 여론조사 결과 51% ('21년)에서 67% ('24)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2 최근 노동단체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고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에서 월 1회 또는 격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은 지역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시작하였음

3 (비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착시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이 월 13시간 가량 많음

4 AI 등장에 따른 인력근무 효율성 제고 필요성 제기, 저출산·고령화 지속, 사회적 요구의 증대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시범 시행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다만,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 제도 도입시 임금 유지 조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이 병행 강구되어야 함

6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만 시행 가능한 제도라는 인식 하, 영세 사업장에서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2. 기존 수소 정책의 점검과 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요약 및 평가 ≫

◇ **세계적인 수소 정책의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수소 정책은 청정수소의 생산과 이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연관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내실을 기해야 함**

□ 검토배경

○ 수소(H2)는 이산화탄소(CO2)를 발생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재화로 최근에 그 이용 기술의 성공을 전제로 수소 보급 정책이 추진 중

○ 수소는 자연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존재하므로 수소를 얻으려면 추가적 경제활동이 필요

○ 수소 자체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계 존재**

* 수소에 대한 접근성·이용가능성과 관련된 기술진보 속도가 느리고, 그레이 수소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청정수소 제조 비용이 높음

□ 기존 수소 정책 평가

○ **기존 수소 정책의 한계와 제약점 존재**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수소 공급망 확충에 대한 명확한 경로 설정 없이 목표량을 제시**

○ 각종 계획에서 **수소 관련 전력 목표 예측 변화**

* '21년이행계획: 2030년 발전용 수소 수요 353만tH2(48TWh 발전)
'23년인증제운영방안: 80만tH2(13TWh 발전)으로 발표

○ 수소 관련 기술은 첨단 기술로 이용·운송·저장 기술의 **성공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부 정책은 성공을 전제로 수립**

* 기업: 수소산업의 불확실성으로 고려하여 적극적 투자 자제
한국가스공사('23): 해외그린수소 사업 중단
국제에너지기구(IEA): 전세계 그린수소 보급전망치 하향(IEA, "Renewables 2023-Analysis and forecasts to 2028",2024.(오현영, 「2023년 재생에너지 보급 동향 및 전망(IEA)」,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제24-4호, 2024.2.19.)

○ 수소 자동차나 수소 선박도 시장에서의 **소비자반응과 선택이 중요**

< 수소차 등록 대수 >

구분	'18	'19	'20	'21	'22	'23
신규	-	4,190	5,823	8,498	10,219	4,635
누적	893	5,083	10,906	19,404	29,623	34,258

※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각 연도

○ 청정수소·암모니아 수입 도중 **원료 조달 문제 등 공급망 교란 시 국내 청정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

‹‹ 시사점 ››

1. 정책 당국은 전력수급 안정, 효율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국내 기술 축적 및 연관 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소 정책을 면밀하게 추진하여야 함

2. 촉매 개발 등 그린수소 생산, 수소 혼소(연소), 수소 배관망, 탄소 포집, 철강의 수소환원 등 청정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

3. 충분한 양의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정 원자력 발전량을 확보하고, 풍력발전이 여의치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보급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4. 청정수소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5. 수소 자동차·선박 등의 보급은 소비자 선호도, 공급자의 기술개발 속도, 친환경 운송수단의 세계적 보급 흐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수소의 친환경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청정수소 인증 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등을 기초로 현실적 관점에서 추진 필요

3.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농어민 수의 급감과 초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업소득 장기 정체, 지방소멸 위기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 검토 배경

○ 정부에서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다양한 **공익직접지불제를 운영**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음

*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 등으로 구분

○ 정부의 공익직불제와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총 8개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 농어민수당 지원 현황(2023년 5월 기준) >

시도	사업명 (조례 제정)	시작 년도	23년도 예산 (억원)	지급 대상	지원 예상 (천명)	지급액/년 (지급시기)	지급방법	주민 등록	경영체 등록	지원농지	비고
경기	농민 기본소득 ('21.5.)	'21	1,472	농업인 (개인별)	230	60만원 (3회, 분기별 월15만원)	지역상품권 (카드)	2년이상 비연속 5년	1년이상 농업 확인서	시군내 및 연접시군 (시군 기준)	
강원	농어업인 수당 ('20.3.)	'21	593	농임 어가	84	70만원 (1회 7월~)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2년 이상	2년 이상	도내 및 도 연접시군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20.9.)	'22	558	농임 어가	93	60만원 (1회 6~)	지역상품권 (지류, 페이)	3년 이상	3년 이상	전국	
충남	농어민 수당 ('20.2.)	'20	1,447	농어업인 (개인별)	250	45~90만원 (1회 7월경)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1년 이상	1년 이상	전국(단, 도시지역 거주자 추가요건 확인)	충남도내 주민등록 주소 有

전북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19.10.)	'20	706	농업가 양봉농가	118	60만원 (1회 9월~)	카드, 지류 등 지역상품권	2년 이상	2년 이상	도내 및 도 연접시군	어민수당 분리시행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19.10.)	'20	1,322	농임 어가	220	60만원 (1회 4~5월)	지역상품권	1년 이상	1년 이상	전국	
경북	농어민 수당 ('21.1.)	'22	1,382	농임 어가	232	60만원 (2회 4~6월 8월)	지역상품권 (지류, 페이)	1년 이상	1년 이상	도내	상하반기 분할지급
경남	농어업 인수당 ('20.6.)	'22	755	농임어가 (부부 개인별)	247	30만원 (1회 7월~)	지역상품권 또는 농협체움 카드	1년 이상	1년 이상	도내 및 도 연접시군	공동경영주 (부부개별)
제주	농민 수당 ('20.7.)	'22	183	농업인 (개인별)	45	40만원 (1회 6월~)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3년 이상	2년 이상	도내	개인별지급 (어업인 수당 분리시행)

○ 농어민기회소득은 일차적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시장회복 및 시장창조로서의 의의**를 지님

○ 농어민기회소득의 지급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경기도 기회소득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실행된 두 가지 세부 실천과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으로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소득자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동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시혜성 복지를 보완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소득지원을 결합한 경기도형 장애인 지원제도'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업 및 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증진**하여 **농어업환경 조성과 농어촌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이로 인해 **농어민들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소득지원 정책**

○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인 농어민은 구체적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어업 생산활동을 하는 농어업인**

* 지원대상: 청년농업인(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1만 7천 700여명
지원금액: 월 15만원(연 180만원)
※ 농민·농촌기본소득 중복 안됨

<< 시사점 >>

1. 농어민들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포착해 나가도록 돕는다는 것이 정책 목적
2. 사회적 가치 창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득지원으로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에 일정 기준 적용
3. 대상자를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하므로 일정 계층을 대상으로 모두 다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수당과 별도의 개념
4. 농어민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 향상에 대한 소득지원임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확대(교육, 훈련, 학습)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한 소득지원
5.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훼손된 농어촌 재생을 위한 농어촌의 신규인력 유입 및 기존인력 유지,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환경농어업인 계층(예,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이민)이 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지급적용 대상 범위

4. 전통시장 청년몰, 실패의 경험과 발전모델 탐색('24.1.26./경기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시작한 청년몰 조성사업은 폐장사례가 속출하는 등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짐. 상인조직이 주도하는 청년 상인육성모델을 도입하여 청년창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의 방안 마련 필요

Ⅰ. 청년몰은 실패한 정책인가?

□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사업으로 인식되는 청년몰

○ 청년몰 관련 언론보도의 절대다수는 성공보다 실패 사례로 소개

- 2016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높은 공실률과 폐장사례 속출 등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번성했다 폐장한 청년몰 사례: 인천신포국제시장 "눈꽃마을"〉



자료: "[포토]신포시장서 '겨울왕국 늦캉스'", 경인일보(2018.8.27.).;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p"(2023.12.26. 검색).

- '23년 10월 KBS는 그동안 청년몰에 7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전국 청년몰 633개 점포 중 약 40%는 휴·폐업 중인 것으로 보도

○ 청년몰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객관성이 부족

- 세계일보는 청년몰의 월 매출이 646만원에 그친다고 하였으나 전국의 종사자수가 1명인 외식업체의 월평균매출액과 유사한 수준임

- 또한 세계일보는 오래된 청년몰일수록 휴·폐업률이 높다고 하였으나, 소상공인 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정 연도와 휴·폐업률은 상관성 미약

□ 청년몰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에 체계적 접근 필요

○ 휴·폐업률과 매출액은 청년몰 정책의 평가 지표로 불충분

-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 청년창업 성공률 등 정책 목표 측면의 성과 평가가 중요하나 평가방법론 정립과 관련 데이터 구축이 미비한 상황

○ 청년몰 실패 논란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향은 설득력이 부족

Ⅱ. 청년몰의 사업구조와 존재양태

□ 공고문을 통해 본 청년몰의 정체성과 사업구조

○ 청년몰 정책은 사업초보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전통시장 재활성화라는 난제 해결의 임무를 부여한 셈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관련 지원사업 공고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청년몰 조성사업	전통시장(상점가) 내 유휴공간 활용 기반시설 개선 등 청년창업공간조성 및 창업지원(임차료 보조, 인테리어 등)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 원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당 최대 40억 원	국비: 50% 지방비: 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활성화) 청년몰당 최대 5억 원	국비: 50% 지방비: 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확장)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편의시설 및 청년창업공간 추가조성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진입로 확장, 바닥, 조명, 환기시설 및 점포추가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확장) 청년몰당 최대 10억 원	

자료: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2021.6.16.).

○ 지자체의 청년몰 의무 운영기간과 점포별 임대료 지원기간 계약유지 의무는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왜곡된 운영을 초래하는 역효과 수반

- 정부는 국비지원 조건으로 지자체에 5년간 청년몰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폐장이 불가피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청년몰의 발생 배경으로 작용

□ 존재양태 분석을 통한 청년몰의 실체적 이해

○ 청년몰은 각각의 소유구조와 물리적, 입지적 여건 등에 있어 획일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양태를 보여 특성의 유형화를 통한 실제적 접근이 필요

○ 청년몰의 사업성과와 청년몰 특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청년몰 특성 요소 구성 전략을 모색할 필요

Ⅲ. 소비자와 청년상인 관점의 청년몰 평가

□ 소비자들의 청년몰 인지도와 이용 만족도

○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로 높은 편이며, 대도시 또는 유명관광지 인접 청년몰일수록 이용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

○ 소비자들의 청년몰 방문 경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업종/품목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가장 큰 매력요소로 인식

○ 우량한 소비자 만족도와 불량한 운영지표(폐장률, 휴·폐업률) 간의 괴리는 이용고객 재방문율과 청년상인 입점조건 측면에서 해법 모색 필요

□ 입점 청년상인의 관점에서 청년몰의 성과와 과제

○ 저비용 창업도전 플랫폼으로서 청년몰의 가치 재평가 필요

○ 청년몰 운영·관리 수준은 지자체에 따라 큰 편차가 있으나 청년상인의 주체적 역할이 미흡한 점은 공통적

〈매장영업 소홀에 따른 방문 매력 저하 사례: 천안 청년몰 '흥흥발전소'〉

2023년 9월 연구진이 방문한 천안명동상점가 청년몰 '흥흥발전소'는 18개 점포 중 6개가 공실 상태로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영업에 집중했으나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방을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 외부 출장 등으로 대면영업의 비중이 높지 않다고 함. 천안 청년몰은 4층 건물의 입체형 청년몰로서 외식업종 중심인 1층의 경우 샐러드, 햄버거, 양식, 분식, 중식 등의 점포로 구색을 갖추고 있었으나 현재는 카페와 중식만 영업중이고 카페는 거의 점심 장사만 하는 상태이며, 공방 등이 입점한 2층 이상의 점포들은 낮시간에도 거의 문이 닫혀 있음. 정부 지침에 따라 천안 청년몰에도 영업시간 준수 규정 등이 담긴 '자치규약'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인데, 이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의 문제이거나 규칙위반자 계약해지 시 공실률 상승을 우려하여 묵인하는 상황일 수도 있음.

자료: 천안 청년몰 청년상인 2명과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견해를 부가하여 작성한 내용임.

Ⅳ. 청년몰 사업모델의 발전 방안

□ 청년몰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관리 개선과제

○ 청년상인 실력 향상이 상업시설로서 청년몰 활성화의 핵심과제

- 고객총량 확대를 통해 매출액, 공실률 등 성과지표 개선이 가능하며, 고객총량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경험 고객의 재방문율 제고가 핵심 과제
-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몰의 강점 요소로 파악된 '다양성, 품질, 차별성, 가격 등 제품 자체의 매력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
- 청년상인 실력 향상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전문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상업시설로서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

○ 개점휴업 문제와 공실 방지 문제의 해소를 위한 입점조건의 합리화

- 초기 입점자에 대한 2년간의 임대료 지원은 정부 지침에 있으나 공실 후속 입점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규정은 미비하며 이는 공실 지속 요인으로 작용
- 청년몰 성과 평가에서 공실률 지표가 중요하다면 부실 사업장의 퇴출과 공실 후속 입점자의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필요

○ 쇠퇴상권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 가운데 청년몰의 핵심 목표를 재설정하고 청년몰 조성 형태와 지원체계를 리모델링할 필요

□ 청년창업 거점으로서 청년몰의 사업모델 발전 방안

○ 사업목적에 따른 청년몰 유형별 사업모델의 차별화 방안

- '생활밀접업종 청년창업지원'을 핵심목표로 청년몰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며, 청년몰의 세부 사업목적을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청년몰 유형을 설정

〈사업목적에 따른 청년몰 유형 구분 및 적정 사업모델 예시〉

청년몰 유형	인큐베이터형 청년몰	테스트베드형 청년몰	핫플레이스형 청년몰
사업목적	창업준비 지원	창업성공 지원	쇠퇴상권 활성화
입점대상	예비창업자	초보창업자(2년 이내)	고숙련창업자(5년 이내)
창업분야	외식업	범용성 높은 품목	희소성 높은 품목
지원내용	풀옵션 사업장 제공 창업아이템 개발 지원 창업 기초교육/멘토링	임대료/기반시설/인테리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임대료/기반시설/인테리어 홍보/마케팅 지원 정착용 점포매입 지원
지원기간	단기(3개월 내외)	중기(3년 이내)	장기(5년 이내)
임대료수준	무료	1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
소유구조	공공직영	공공임대/공공재임대	공공재임대/민간임대
매장배치	구역형	구역형/입체형	산재형/구역형
상권위계	지역중심/근린중심	지역중심/근린중심	광역중심/관광중심
입지조건	상급	상급/중급	중급/하급
유사사례	경기청년푸드창업허브(안산) 신촌박스퀘어 청년키움식당	안산다농마트전통시장 '톡톡' 군산공설시장 '물랑루즈201'	원주중앙시장 '미로예술시장' 서울경동시장 '서울웨미리'

○ 청년상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단계적 정책 플랫폼 구상

- 창업탐색 단계, 창업성장 단계, 자립경영 단계로 이어지는 청년상인 성장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상인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 유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단계별 플랫폼 구상〉



○ 상인조직이 주도하는 지역상권 친화형 청년상인 육성모델 확산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상인들이 청년몰 졸업 이후에도 정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고령화 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심각하게 경험한 일본에서는 상인 고령화로 젊은 상인 유치를 통해 상권 활역을 유지하는데 대한 필요성 인식
  · 일본 나라시의 모치이도노센터 상점가의 경우 기존 상인조직이 자생노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청년 상인 유치 및 성장 지원을 함으로써 전체 상점가 유동인가 증가와 공점포 감소로 연결되는 선순환 파급효과를 창출
- 우리나라는 상인 조직이 자생력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인 조직 주도형 청년상인 육성모델을 보급하되 정부가 촉매역할을 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
  · 지역상권법 등 제반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상인조직화 사업들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친화형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지원

5.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연구인력과 혁신의 관점에서 ('24.2.16./대한상공회의소)

≪ 요약 및 평가 ≫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 역량에도 영향을 미침. 기술이민 확대, 여성 연구인력 환경 개선, AI 기술 활용 및 타산업 혁신 유발효과가 큰 분야 육성 등의 대책이 필요함

□ 주요내용

Ⅰ. 서론

○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젊은 기술인재 확보가 어려워져 국가 혁신역량이 낮아질 수 있음

○ 주요 선진국은 국가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재능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Ⅱ. 잠재성장률 추정과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

1. 국내 잠재성장률의 추이

○ 우리나라의 최근 잠재성장률은 약 1%대로 진입하였음

○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자본투입 저하, 생산성 향상속도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 잠재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

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에 따른 미래 잠재성장률 추정

○ 향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투입, 자본축적, 총요소생산성이 중요한데, 이중 노동투입과 자본투입 등 요소투입을 늘리기는 어려워 보임

○ 총요소생산성이 금융위기 이후 OECD국 평균 수준인 0.6%p에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2030년 1.2%, 2040년 0.7%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결국 잠재성장률의 0%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총요소생산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과거 선진국 수준(1.2%p)만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면 2040년 잠재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0.7%)보다 0.6%p 높은 1.3%까지 높아질 것으로 판단

2)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선행연구에서는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research)과 기존 지식을 통해 창출되는 아이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는데 충분한 연구자의 수를 확보하고 질적으로 연구자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연구인력 감소와 연구인력 고령화로 연구자 당 생산성을 낮출 가능성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취업자의 고령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는 쉽지 않은 도전과제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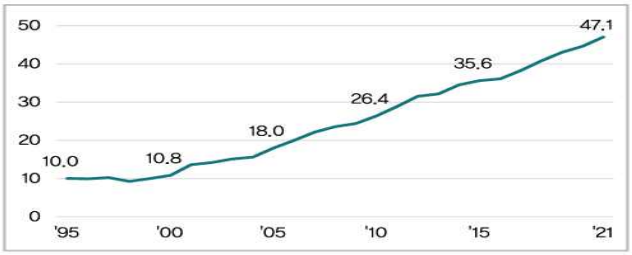
Ⅲ. 우리나라 연구자의 양적·질적 평가와 전망

1. 연구 관련 양적 평가

1) 한국과 OECD국의 연구자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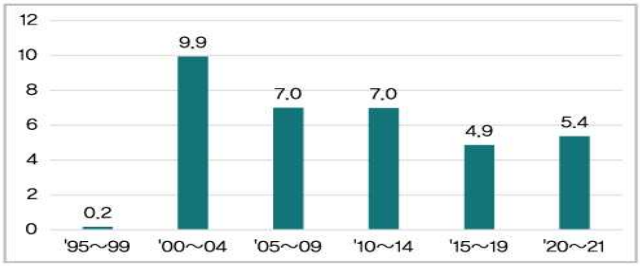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전산업 연구인력 수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7.3%씩 증가해 왔음

국내 연구인력 추이 <단위: 만명>



주 : 풀타임 환산 인력 기준
자료 : OECD

국내 연구인력 연평균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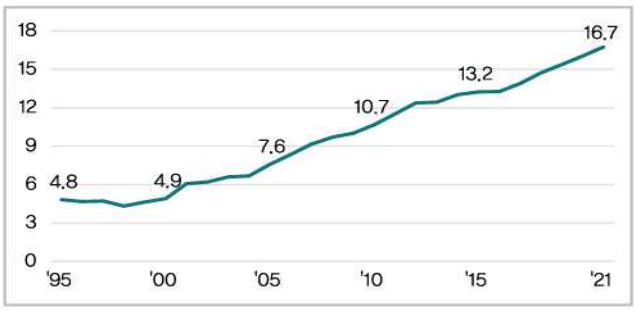


주: 풀타임 환산 인력 기준
자료: OECD

○ 국내 취업자 중 연구인력 비중(취업자 1,000명당 연구인력 수)은 2000년 4.9명에서 2021년 16.7명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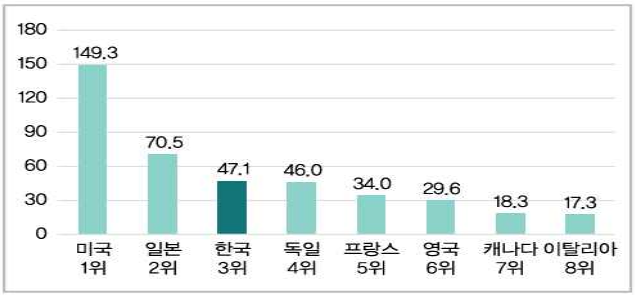
○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절대적인 연구인력 수는 OECD 35개국 중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많음

국내 취업자 1,000명당 연구인력 <단위: 명>



주 : 풀타임 환산 인력 기준
자료 : OECD

OECD국 연구인력 수 순위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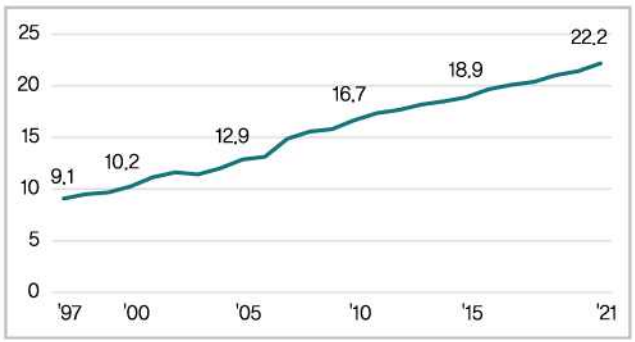
주1) 풀타임 환산 인력 기준
2) 괄호안은 OECD 35개국 중 순위
자료: OECD

○ 자료가 존재하는 OECD 35개 국가 중 취업자 1,000명당 연구인력은 한국이 가장 높았음

2) 한국과 OECD국의 여성 연구자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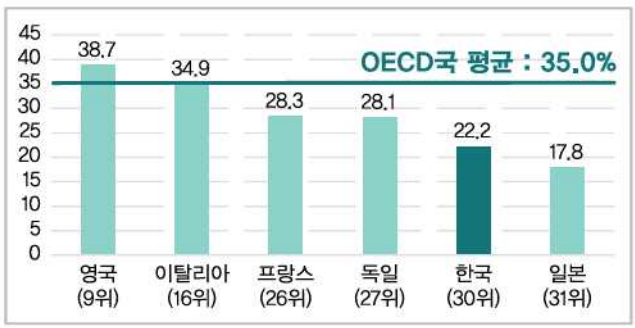
○ 국내 총 연구인력 대비 여성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남성보다 크게 미흡하며 OECD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최하위권에 속해 있음

우리나라 여성연구원 비중 추이 <단위: %>



주: 인원수(Headcount) 기준
자료: OECD

OECD 주요국 여성연구원 비중 <단위: %>



주1) 인원수(Headcount) 기준
2) ()안은 자료가 제공되는 OECD 31개국중 최신 연도 값 기준 순위 의미
자료: OECD

3) 국내 산업별 연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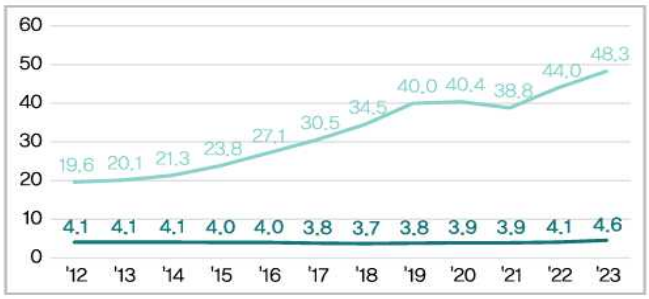
○ 국내 산업별 연구인력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약 72%, 서비스업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 상위권에 위치

4) 기술 이민 추이

○ 우리나라는 기술인력의 이민자 증가 속도가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으나 일본은 부족한 고도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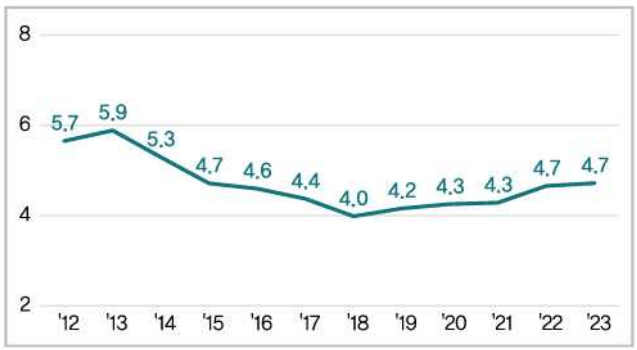
○ 생성형 AI,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고숙련 이민자들이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음

외국인 전문인력 수 <단위: 만명>



주1) 한국 외국인 전문인력은 체류자격 기준으로 EB-1~EB-7으로 정의,
2) 일본 외국인 전문인력은 후생노동청의 전문적, 기술적 체류자격 보유자 의미
자료: 한국 통계청, 일본 통계청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 <단위: %>



주: 한국 외국인 전문인력은 체류자격 기준으로 EB-1~EB-7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

○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 발달, 개방적인 문화, 월등한 임금수준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존재 등으로 미국은 해외의 혁신인재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음

2. 연구 관련 질적 평가

1)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 우리나라의 특허실적 평가

○ 우리나라의 국제특허건수(PCT)는 2021년 20,679건으로 세계 4위 수준, 미국·일본·유럽의 특허청 모두에 등록된 특허를 의미하는 삼극특허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3,379건(2020년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준

○ 2021년 국내 과학기술논문 발표 건수는 약 8.4만건이지만, 과학기술논문 세계점유율은 3.5% 수준

2) 글로벌 기관이 평가한 국내 혁신역량

○ 우리나라의 혁신 효율성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나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미흡한 것으로 평가

3. 향후 연구인력 공급환경

○ 앞으로 우리나라 연구인력의 공급환경은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음

○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는 2040년에 2,903만명, 2070년에는 1,71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 만약 통계청의 인구전망이 현실화되고 취업자 중 연구인력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40년 연구인력 수(인원수 기준)는 2020년 55.8만명보다 16.4% 줄어든 43.7만명이 될 전망

○ 다만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여성 연구인력 확보만으로는 연구인력 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 결국,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성연구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인력 유치, AI의 적극적인 활용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아울러 같은 연구인력에도 타 산업에 유발효과가 큰 R&D 투자, 인공지능 등의 활용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대 노력이 필요

Ⅳ. 정책적 시사점

1. 기술 이민 확대

○ 해외 전문인력은 근로조건 등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기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민을 결정하는데 국내 이민여건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

○ 외국인 우수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

○ 해외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와 같이 고소득자와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를 위한 비자체계의 도입 필요

2. 여성 연구인력 환경 개선

○ 결혼·출산·양육 관련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전공선택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고급인력 중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커 우리나라는 OECD국과 비교하여 여성 연구인력 비중이 매우 낮음

○ 이공계 고급인력 중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확충이 필요

○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 독려하고 여성 고급인력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사업 확대

○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타산업 생산성 유발효과 큰 부문 기술개발

○ 탄소중립 기술 관련 R&D 투자는 화석 연료 기술 개발보다 타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음

○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높은 리스크로 과소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

4. 인공지능, 자동화 활용도 제고

○ AI는 노동시장의 재편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기업들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혁신이 필요

○ 한편 업무 시 AI 기술 활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의 단순·반복 일자리 감소 및 AI 도입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문제의 우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요구됨

5. 친혁신형 제도 설계

○ 총요소생산성으로 연결되는 아이디어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법적·정책적 보호가 필요

○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검토

6.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24.2./국회입법조사처)

≪ 요약 ≫

◇ 예금자보호한도는 23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재점화된 예금자보호한도 이슈

○ **(배경) 예금자보호한도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1인당 5천만원의 보호한도가 23년간 유지되고 있어, 1인당 GDP 및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미국 SVB파산사태와 우리나라 새마을 금고 위기로 예금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 증폭됨

○ **(정부 입장) 보호한도 상향에 유보적 입장**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한도 상향 가능하지만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할 필요

○ **(정치권 입장) 최근 여당의 총선 공약**

- 여당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내용(5천 만원 → 1억원)

□ 예금자보호한도 현황

○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3년째 그대로임
- 관계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보호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됨

※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대상은 아니고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큰 예금, 적금, 증권사계좌의 예수금, 개인의 보험계약 등에 한정하여 적용

○ 주요국과의 비교

- 우리나라는 업권·상품과 관계없이 5천만원으로 동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 보호한도 적용

< 주요국의 금융업권별 보호한도 >

구 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은행		5천만원	$ 25만	£ 8.5만	¥ 1천만
금융투자		5천만원	$ 50만	£ 8.5만	¥ 1천만
보험	생보	5천만원	대체로 $ 10~50만	100%	90%
	손보	5천만원	대체로 $ 30만 (산업재해 보험은 전액)	장기·의무 보험 100%, 그 외 90%	80~100%

※ 자료: 각국 예금보험기구 홈페이지, KDIC 조사분석정보(2018), 보험 연구원 보고서(2020)

< 주요국의 은행업권 보호한도 비율 >

구 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	1.2배	3.1배	2.2배	2.1배

※ 주: IMF의 2023년 각국 1인당 GDP 추정치를 활용하여 보호한도 비율 계산

□ 유보적 입장의 배경

○ 소수 예금자 편익 증가 VS. 전체 소비자 부담 증가

- 5천만원 보호한도 내에 있는 예금자가 대부분임

< 현행 보호한도에서 보호예금자 수 비율('23.9.30. 기준) >

구 분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상호저축
보호 예금자 수 비율	97.8%	99.7%	93.9%	99.4%	94.1%	97.2%

※ 주: 보호예금자 수 비율: 보호한도이하 예금자 수 / 부보대상 총 예금자 수

※ 자료: 예금보험공사(2024)

-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대출금리 인상의 경로를 거쳐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

-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져 시장환경 악화 시, 저축은행 리스크 상승 및 한정된 금융자금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잔존하는 공적자금 상환 부담**

- 금융권은 2003년 이전까지의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부보예금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운영되는 상환기금은 2027년 말 종료 시까지 금융권의 부담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보호한도 상향이 어려움

□ 관련 고려사항

○ **여신심사능력의 차이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의 위험수준**

- 은행에 비해 미흡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여신심사능력과 리스크 관리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나 2023년 새마을금고 위기사태로 나타났음
- 업권별 업종별 기업대출잔액 비중을 살펴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기업대출의 절반 정도를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집중하고 있음

< 2023년 3분기 말 기준 업종별 · 업권별 대출비중 >

구분(업종/업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건설업 및 부동산업	**24.9%**	**50.0%**	**46.8%**
금융 및 보험업	6.0%	13.9%	2.2%
도소매, 음식숙박 및 운수창고업	39.9%	19.0%	21.7%
기타	29.2%	17.1%	29.3%
계	100%	100%	100%

※ 주: 1) 은행: 국내은행(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합산) 기준 2)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제외

※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2024)

- 2023년 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안정적인 반면, 저출은행과 상호금융의 PF 연체율은 급격히 높아졌음

< 업권별 부동산 PF 연체율 >

구분		전체	업권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0		0.56%	0.29%	2.43%	0.30%
2021		0.37%	0.02%	1.22%	0.09%
2022		1.19%	0.01%	2.05%	0.09%
2023	1분기 말	2.01%	0.00%	4.07%	0.10%
	2분기 말	2.17%	0.23%	4.61%	1.12%
	3분기 말	**2.42%**	**0.00%**	**5.56%**	**4.18%**

- 2023년 3분기 말 기준 은행은 고정이하여신 규모(11.5조원)에 비해 대손충담금(24.7조원)과 대손준비금(15.9조원)을 양호하게 적립하고 있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고정이하여신이 대손충당금을 상회하고 있음

< 업권별 충당금 및 고정이하여신 >

(단위 : 조원)

구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1	대손충담금	19.6	4.3	13.9
	대손준비금	18.2	-	-
	고정이하여신	11.8	3.4	11.5
2022	대손충담금	23.0	5.2	16.5
	대손준비금	17.9	-	-
	고정이하여신	10.1	4.7	15.3
2023. 9월말	대손충담금	**24.7**	**6.0**	**18.5**
	대손준비금	**15.9**	**-**	**-**
	고정이하여신	**11.5**	**7.0**	**27.4**

※ 주: 1) 은행: 국내은행 기준 2) 상호금융: 농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

※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2024)

○ **위험부담의 업권 간 형평성 문제**

- 저축은행은 이미 업권 중 가장 높은 예금보험료율(0.40%)을 부담(은행 0.08%, 금융투자 0.15%, 생명보험 0.15%, 손해보험 0.15%, 종합금융 0.15%, 상호저축 0.40%)하고 있지만, 그 고유계정은 여전히 약 1.8조원 수준의 누적적자 상태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부담에 한계가 있음

< 예금보험기금 적립액(2022.12.31.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상호저축
기금적립액	117,668	4,579	56,138	18,247	387	Δ17,896

※ 자료: 예금보험공사(2023)

□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 **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 고려
- 대부분의 예금자들이 보호한도 내 여러 예금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현실 감안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고려할 점**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여신심사능력 부족에 따른 과거 부정적 파급효과와 최근의 위험증대 상황 고려 필요
- 업권과 관계 없이 동등하게 보호한도 상향 시 은행으로부터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자금이동 개연성 고려 필요

➡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예금보호한도를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7.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24.2./국회입법조사처)

《 요약 》

◇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 및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양하나 범위가 협소함. 외국은 개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그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각 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

□ 간병비 급여화의 현실성 검토 필요

○ (정부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을 대학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예정

- 장기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간병인 비용을 100% 지원
- 요양병원은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권 범위 밖에서 관리되고 있음

○ (정치권 반응)

- (민주당)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추진
- (국민의 힘)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공개하며, 간병비 국가부담을 확대하려는 방향

○ (간병비 급여화 시 효과 예상)

- (긍정적 효과) 국민의 의료비 경감
- (부정적 효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과다수요발생우려, 서비스의 질 저하

□ 간병비 부담 현황과 공적지원 정책

○ **간병비 부담 현황**

-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사회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병비 지원 정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제도**
- 간병비 급여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료법」 제4조의 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서는 요양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에 대한 별도의 **현금급여 제도**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 공공의료원을 활용하여 **간병비 지원사업**을 운영

□ 우리나라의 정책의 문제점

○ **사회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병비 지원 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비(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시설개선비에 한함) 등 별도의 재원과 경로를 통해 특정 **대상자 일부에게만 간병비가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별적 복지사업은 수급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지원금 규모**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임

○ **간병비의 공적 지원의 한계**

- 고령화 속도와 수요 증가 추이를 고려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부담이 있음

□ 간병비 지원 정책의 외국 사례

○ 영국의 간병비 지원 정책

- 정부는 1948년 국가보건의료체계 제도를 도입하고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음). 국민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과 범위 축소 중
  ※ 다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의 경우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보험사는 가격 경쟁력 있는 저가형 장기간병보험을 출시하여 가입 유도하고,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

○ 미국의 간병비 지원 정책

- 공적보험인 메디케어는 병원 입원과 의사 방문, 처방 의약품만 혜택을 제공하고, 메디케이드에서만 장기 간병비를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에 한함
- 정부는 간병비를 보장하는 민감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특약(보험금 및 거치금 이자에 대한 면세, 보험료 인상 금지 등)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
- 정부는 보험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비용을 면세 처리하고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함

□ 우리나라의 정책의 개선방향

○ 간병비 지원 정책의 개선 추진 방향

- 가입 여력이 되는 국민들이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 · 제도적 근거가 필요
-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각 기관간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 필요 및 간병 필요도가 낮은 환자에 대해 **요양병원에서의 탈시설을 유도 필요**

8. 위기 아동 · 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24.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공적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소년보호 체계의 시설에서 퇴소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자립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위기 아동·청소년을 포괄하여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 및 방안을 소개함

□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 원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과 지지,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공적 체계의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발굴 또는 발견 경로에 따라 각각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보호체계, 법무부 관할의 소년보호체계로 분리된 공적 체계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보호 종료 혹은 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데, 체계 분절 및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정확한 규모와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움

□ 자립지원의 대상과 자립지원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나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이거나, 만 18세에 달해 보호 조치가 종료되었거나(아동복지법 제16조), 만 18세 이전 원가정으로 복귀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아동복지법 제16조의3) 개인을 의미함

-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자립준비 청년으로만(연간 약 1만 2,000~1만 3,000명)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아동복지법」 개정으로(표 1) 보호 중 아동·청소년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음

<표1>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 정의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08.0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체계 보호 종료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2019년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토대로 예산과 서비스, 정책 대상자를 최근까지 개선 및 확대해 왔음**

- 특히 2019년에 도입된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상자와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024년부터는 50만 원으로 높임
- 2019년에 7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개선, 확대되어 더 많은 지역에서 더욱 많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본인부담률을 총액의 14%로 낮추고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지원함

- 2023년부터는 보호 기간을 개별 아동의 자유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한「아동복지법」을 시행하고, 보호기간 연장 청소년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포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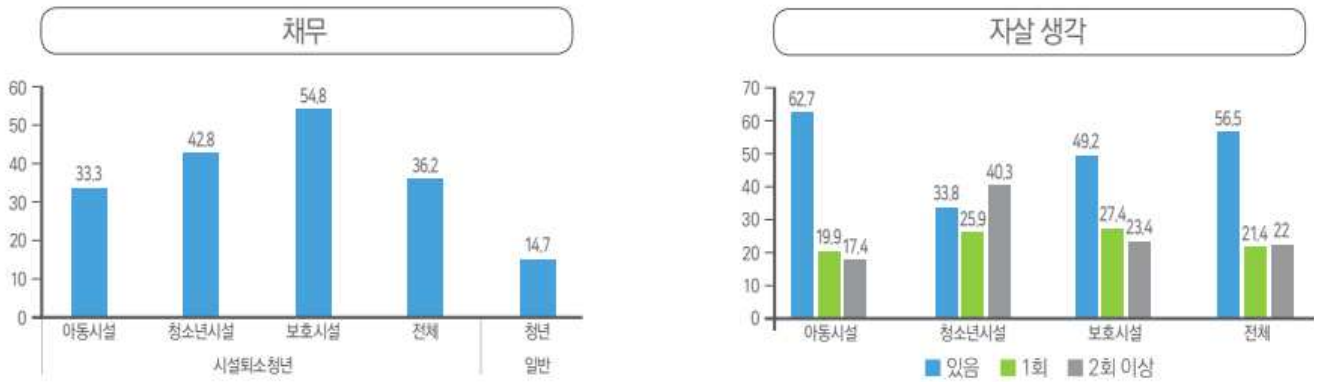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소년 보호체계로부터 자립하여 청년 또는 성인으로서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자립지원정책의 대상은 많으나,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에게 국한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할 시설 보호 또는 퇴소 아동·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은 극히 일부만 자립지원관을 통한 사례관리, 자립지원수당 등 서비스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또한 만 18세가 되기 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청소년쉼터로 전원 조치하거나, 이용한 후 성인 연령으로 퇴소한 경우에도 청소년쉼터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자립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왔음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시설(1호, 6호)의 경우 소년원(8~10호)을 제외하면 위기 아동·청소년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 보호하는 것이나,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불가해도 자립 여건이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공적 자립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소년보호체계에서 정책 대상으로 삼는 보호 아동·청소년이 중복되기도 하고, 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에 있어 취약성이 더 높아 오히려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됨

-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소년보호체계의 시설 퇴소 혹은 보호 종료 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대학 진학률, 채무 정도,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경험, 보험료 체납 비율, 부정적 생애 경험 등에서 부정적인 자립생활 실태를 보임
-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시설 자립준비청년보다 청소년보호체계 청소년 시설과 소년보호체계 보호시설 퇴소 청년이 더욱 다면적인 취약성을 나타났으며, 자살을 2회 이상 생각한 비율 또한 청소년시설이 40.3%로 아동시설(17.4%)보다 2배 이상 높고, 보호시설도 23.4%로 아동시설보다 6% 포인트 높음

<그림1> 시설 보호종료·퇴소 청년의 자립생활 실태



<출처 :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20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 · 청소년 · 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정책 개선 과제

○ 2024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전에 아동보호체계를 떠나 청소년보호체계 또는 소년보호체계를 표류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할 수 있는 개정「아동복지법」을 시행하고, 자립수당과 같은 일부 서비스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보건복지부, 2024). 그러나 아동보호체계 보호 이력 없이 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은 여전히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함

① 자립준비청년 개념 재정의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은 2021년 7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2021)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할 것을 공식화함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함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할 부처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에서 시설을 퇴소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자립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②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기능 통합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 간 관할 부처의 분절성은 자립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격차의 주요 요인임. 자립지원서비스 격차 및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다부처를 기능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해당 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함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시설 입·퇴소, 자립지원 내용, 자립지원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와 정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③ 취약성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 방식 도입

현재의 자립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의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일정 요건(예: 만 18세 이상, 보호 종료 전 연속 2년 가정외 보호, 15세 이상 보호 종료, 아동보호체계 보호 이력)을 갖추었을 때만 제공되기 때문에 사각지대와 배제가 발생함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소년 보호를 통합 관리 하는 체계 내에 심의위원회(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등)를 두어 개별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성, 자립 상황,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현재 민간 영역으로 이어지는 사후 관리 담당자(예: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를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

1. 2022년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에 이어, 2023년에도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전해지며,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신건강 지원 대책 마련이 특히 필요함
2. 경남도의 경우 자립준비 청년 지원금을 확대(정착금, 1천만원→ 1천 200만원)하고, 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보증금 없는 원룸 제공,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직업상담사 및 멘토단 구성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들을 올해 확대하고 있음
3. 전북도의 경우 2021년부터 삼성전자 후원으로 운영 후 지난해 기부 채납된 ‘희망디딤돌센터’ 운영을 통해(도비 416백만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공간 제공(오피스텔 26호) 및 자립교육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자립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4.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심리·정신건강 지원 등 통합서비스 마련에도 힘써야 함

참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지원(보건복지부 '24.2.9.)**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가능

- 아동복지법 개정(2.9.시행)으로 18세가 되기 전,
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 -

< 요약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아동복지법」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

현행	확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부터 5년간 지원

* 관련 지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적용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9.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24.3.4./국토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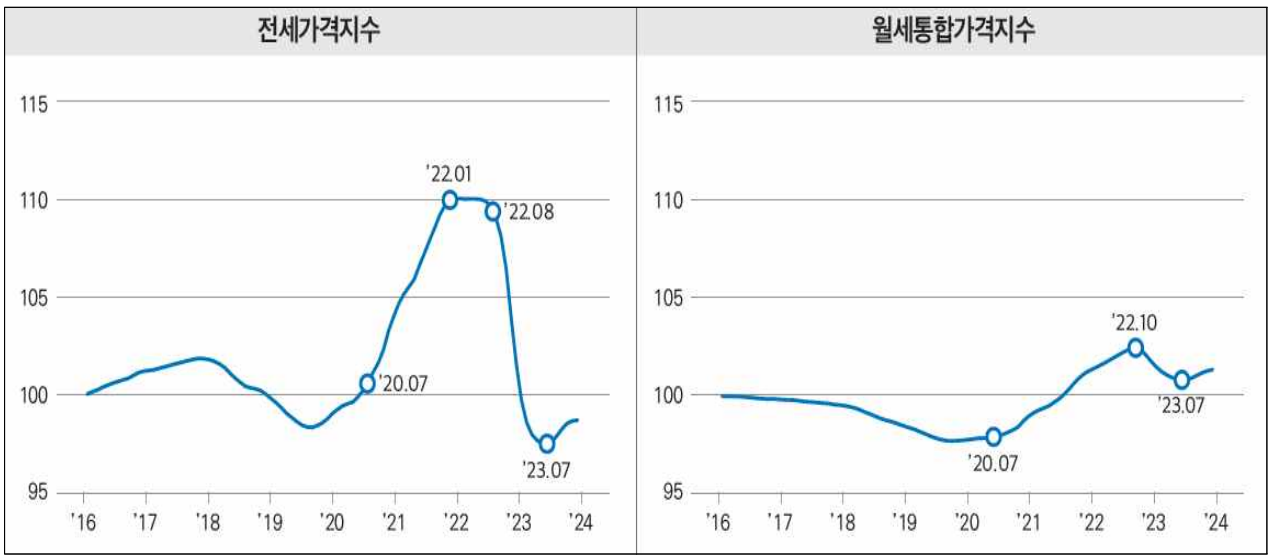
◇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방향 제시

□ 주요내용

○ 전세가격은 2020 ~ 2021년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금리가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최근에는 다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

○ 전세가격 변동에는 전반적으로 매매가격과 금리의 기여도가 높은 가운데, 갱신계약 역시 2020년에 높은 기여를 했던 것으로 분석

○ 2022년 8월 이후 전세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전세시장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임대차가격지수 추이 (2016년 1월=100),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대위변제가 보증금 2억 원 수준에 집중되어 있어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 리스크가 집중

○ 전세가격의 변동은 매매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고 역의 관계도 형성 되어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제도 개선방향

○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 개편 필요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과 더불어 임대차 관련 법 개편에 해당 사항 반영

○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 중심(예: 보유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 육성
-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예: 10% 등)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개선

○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한 제도의 개선

-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면세점 이하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바우처도 병행 시행
- 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기준, 간주임대료 산정방식과 같이 전세에 유리한 제도를 전세와 월세 간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시사점 》

1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유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임대차 시장의 영세 사업자 난립 방지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2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및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관리 철저

10.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24.3./국회입법조사처)

≪ 요약 및 평가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특별교부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전액교부 방침 유지 필요

1 특별교부금 비중 3년간 0.8% 확대

○ 2024년부터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분을 0.8%**(3.0% → 3.8%)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시행**

○ '24년 본예산에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 원을 편성,**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지자체 교부 예정

2 '디지털교육혁신수요'의 내용과 의미

○ **('24년 교부 개요)**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를 위해 [표1]과 같이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3,818억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15억 원을 교부 예정**

-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적용교원 리더그룹 연수지원 사업에 1,66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교육부가 계획한 AIDT 적용 전체 교원 대상 연수(15만 명), 학교별 리더 선도교사그룹 육성(누적 11,500명) 등에 투입할 예정

[표 1] 2024년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개요(안)

(단위: 백만 원)

구분	금액
디지털교육혁신수요	533,300
1 교원의 AI 교수·학습역량 강화	381,800
① AIDT 교원연수 기반·질관리 체계 구축	48,900
② AIDT 적용교원·리더그룹 연수 지원	166,150
③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79,450
④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87,300
2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151,500
① 디지털 새싹(AI기반 학습관리 및 AI·디지털 교육 지원)	51,500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0,000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 2. 29.

○ **(교원 역량 강화에 적극 재정 투입 기대)** 교원 연수에 투입되는 1인당 비용을 추계하면 **선도교원 1인당 약 760만원, 총 836억 원**을 투입하고 학교에 AIDT를 적용할 **15만 명 교원 대상 연수에 1인당 약 55만 원, 총 약 825억 원이 소요** 예상

- **최근 5개년** 평균 교원 연수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1인당 약 27.7만 원**이나 **'24년 특별교부금 교부 시 1인당 AIDT 적용교원은 약 3배, 선도교사는 28배 증가**가 예상

[표 2] 최근 5개년 교원연수운영 예산(당초 기준)

내용	교원연수운영 (백만 원)	전체 교원 수 (명)	교원 1인당 예산 (원)
2019	119,601	432,265	276,685
2020	129,559	433,284	299,017
2021	109,084	435,582	250,434
2022	115,905	441,796	262,351
2023	130,817	440,497	296,976
최근 5개년 교원연수운영 교원 1인당 예산 평균(Ⓐ)			277,092
'24년 교원연수운영 예산 추정치	(Ⓐ) + (AIDT 적용교원 1인당)		827,000
	(Ⓐ) + (AIDT 선도교사 1인당)		7,877,000

주: '교원연수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454호, 2023. 8. 31. 시행) [별표 3]에 따른 세부사업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상반기 공시자료

○ **(지방교육자치 역량 약화 우려) 특별교부금이 0.8% 증가한 만큼 보통교부금이 감액**

-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고** 특성상 세수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보통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
- 불가피하게 교부율간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충분한 중장기 계획이 전제**되어야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

3 향후 과제

○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의 '24~'26년 연도별 재원의 투자·배분 및 사업 계획을 조속히 확정·공개**

-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 전**에 법률이 정하는 **특별교부금의 용도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
- **시·도교육청, 각계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하여 **'26년까지 단계적인 사업 로드맵과 재원 투입 계획을 확정**하여 상반기 중에 발표

○ '디지털교육혁신수요'의 경우 **교육청의 대응투자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한다는 방침을 3년간 유지** 필요

- 추후 지방이양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보통교부금을 추가 잠식할 우려

○ '디지털교육혁신수요'에 따른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의 운용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3년 이내에 종료**

- 단 **불가피하게 재원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증액교부를 적극 검토**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종료예정사업의 중도포기자 및 대체채용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지원, 일 경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37억 300만원 감액된 75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39,345	199,353	75,650	△123,703	△62.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4년도에 종료될 사업들에 대해 중도포기자를 최소화하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종료년도에 실시하는 대체 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도 도입 시 2021년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도에 지속가능한 지역청년일자리 유형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개편된 일자리사업은 ① 지역혁신형, ② 상생기반대응형(②-1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②-2 창업청년 일자리창출지원형), ③ 지역포용형의

3가지 유형이며, 2024년도에는 신규 유형 발굴 및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하에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2년차, 3년차 지원예산만 편성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예산안은 2022년 12월 말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혁신형은 8,555명, 상생기반대응형은 923명, 지역포용형은 457명에 대한(총 9,935명) 인건비 752억 1,100만원과 기타 운영비 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별 내용 및 예산안]

(단위: 백만원)

유형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창업청년 일자리창출지원형	
목적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소멸위기지역 신규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서울 외 지역 창업 초기 청년의 성장, 정착 지원	직무 경험,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연계 분야	지역인증기업, 지역혁신주도산업, 지역균형뉴딜 연계산업 등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의 창업	지역특화·전략산업 및 지역장인 등 분야의 창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공헌 연계 직무 기업
1인당 연간 지원액	· 인건비 2400만원 · 기타지원 300만원 · 인센티브 1000만원	(2년차) · 인건비 2400만원 · 기타지원 300만원 (3년차) · 간접비1,500만원 · 기타지원 150만원		· 인건비 -풀타임 2,250만원 -파트타임 1,125만원 · 기타지원 200만원
지원 기간	2+1년	2+1년	1+1년	1년
'23 현원	9,988명	1,064명		642
'24 예산안 기준	8,555명 (3년차 6,252명 2년차 2,303명)	923명 (3년차 1,624명 2년차 1,299명)		2년차 457명
'24 예산안	62,709	11,868		63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2023년 8월말 기준 현원은 당해연도 상반기 중도포기자로 2022년말 현원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9월에 해당 인력에 대한 대체채용을 실시하여 10월초 기준 현재 11,694명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 2023년 중도포기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 중도포기자 현황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형에서는 2,256명, 상생기반대응형에서는 129명, 지역포용형에서는 947명의 중도포기자가 있었다. 또한 2,3년차만 있었던 기존 유형에서도 현 지역혁신형과 유사한 지역정착지원형에서 2,878명의 중도포기자가 있었다.

[2022년 사업유형별 중도포기자 및 중도포기율]

(단위: 명, %)

구분	신규			기존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참여자	11,031	2,293	4,944	13,057	1,428
중도포기자	2,256	129	947	2,878	299
중도포기율	20.5	5.6	19.2	24.0	21.0

자료: 행정안전부

○ 사업추진기간 동안(2018-2022년) 기존 사업유형의 경우 지역정착지원형에서 평균 중도포기율 20.8%을 보였으며, 2022년부터 추진된 신규유형에서도 지역혁신형은 20.5%, 지역포용형은 19.2%, 상생기반대응형은 5.6%의 중도포기율을 나타낸다.

[2018-2022년 연도별 중도포기율]

(단위: %)

사업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존	지역정착지원형	13.6	25.4	24.4	16.9	24.0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4.4	5.5	9.3	-
	민간취업연계형	11.5	16.6	16.6	16.1	-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	-	-	20.9	21.0
신규	지역혁신형	-	-	-	-	20.5
	상생기반대응형	-	-	-	-	5.6
	지역포용형	-	-	-	-	19.2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가 목적이며, 청년들이 장기간 지역기업에 취·창업하여 해당 지역에 정주하도록 인건비와 기타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일 참여자에 다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매년 20% 이상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채용을 통해 현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서울 이외 지역에 청년들이 장기 근무 및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종료가 예정된 사업이라고 해도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 대체 채용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면 차년도 종료 예정인 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의 2024년도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체채용 실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중도포기자 발생사유와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과다한 중도포기자 발생과 대체인원 신규채용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IMD·WEF 발표 국가경쟁력 평가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에 기반한 경제정책 방향 수립 및 홍보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2,000만원 증액된 12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 2024년도 예산안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데이터 발굴·정제를 통한 유의미한 경기 속보지표 개발과 분석모델 구축 등 경기진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반연구비 9억원이 계상되었다.

[2024년도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82	305	1,225	920	301.6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	-	900	90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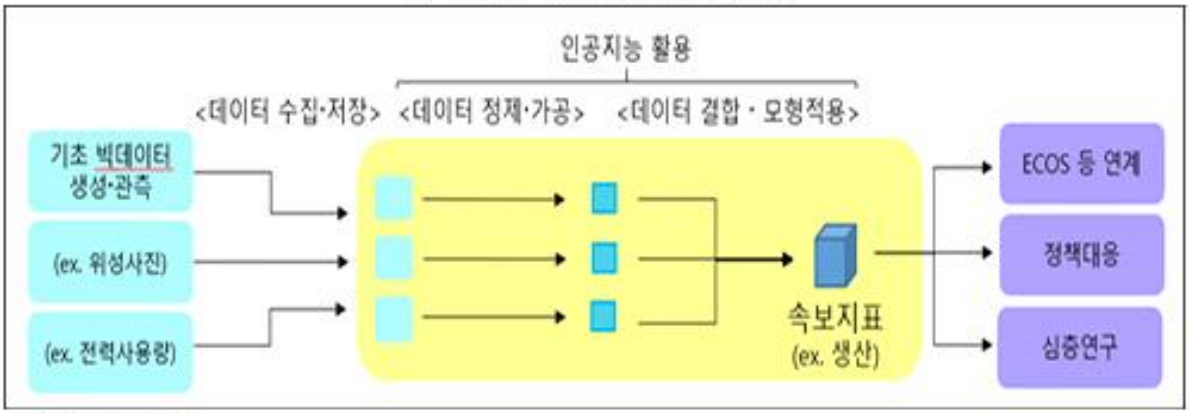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기반 경기진단 시스템은 한국은행에서 2016년부터 관련 연구 및 경기진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경기진단 시 중요 데이터인 GDP 관련 데이터 등은 한국은행이 산출·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필요시 속보성 데이터 및 분석 내용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획재정부가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경기진단 시스템’은 경기진단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및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야별 경기 속보지표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주요 경제 현안 분석 및 경기진단을 하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용역을 공모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한 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속보지표개발 및 경기진단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전문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용역을 맡아 DB 서버구축, 속보지표 개발 및 계량 분석, 주요경제지표 관리 및 심층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진단 시스템 운영절차(안)]



자료: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산업활동동향 및 분기별 GDP 등 현행 통계는 시차가 길어 경기 상황에 대한 조기탐지에 한계가 있는바,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상황에 대해 조기 진단하여 정책대응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실시간 당분기 경제전망(GDP Nowcasting) 모델을 연구해왔으며 2022년 동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거시경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신용카드 데이터, 경제 뉴스기사 기반의 텍스트 자료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소비 Nowcasting 연구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속보성 지표 발굴에 필요한 GDP, 금융·통화 관련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주로 보유하고 있다.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GDP 나우(Now)를 통해 전망모형에 포함된 주요 경제지표가 공표되는 시점마다 당분기 GDP성장률 예측을 공표하고 있으며, EU(ECB)·영국·일본·인도 등 타 주요국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실시간 경제전망 관련 연구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간 한국은행이 Nowcasting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활용해온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는 2023년 6월에서야 사전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므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델 수준으로 갖추는 데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별도로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등 유사·중복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재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과 유사한 빅데이터 기반 경기진단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기보다는 필요시 속보성 지표 현황 및 분석내용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동 사업에 편성된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운영비용 편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의 지원 규모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및 관광소비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4년도 계획안에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당초	2023 수정(A)	2024 계획안(B)	증감 B-A	증감 (B-A)/A
국내관광 역량 강화	46,588	47,693	82,593	52,879	△29,714	△36.0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	-	-	3,000	3,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을 통해 지역민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사업 참여 지자체를 여행할 때 여행상품, 숙박, 음식 등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2022~2023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세부사업 예산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사업 참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도 계획안에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을 신규로 30억원 편성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의 수를 확대하는 한편 할인 혜택 지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및 관광소비 증대
사업기간	· 단년도(2024년 신규, 2022년 및 2023년은 한국관광공사 사업비로 추진)
사업수행	· 민간경상보조(한국관광공사)
사업대상	· 공급: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및 참여업체 * 단계적 확대: 2022년 2개→2023년 15개→2024년 40개→2025년 60개→2026년 70개→2027년 89개 · 수요: 일반 국민
2024년도 계획액	· 30억원 - 방문자 혜택 지원 등 10억원 - 시스템 고도화·유지보수, 운영비 10억원 - 홍보·마케팅 10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음으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사업은 3개월(2022.9.30.~12.31.) 동안 평창에서 2만 4,000여명, 옥천에서 1만 7,000여명이 주민증을 발급받았고, 주민증 발급자 수 대비 업체 이용 건수 비율은 평창 11.1%(2,668건), 옥천 17.9%(3,127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발급 및 이용 현황(2개소)]

(단위: 명, 건, %)

구분		발급		이용		
최초선정	지자체	발급자수	인구 대비 비율	이용건수	발급자수 대비 비율	주요 이용처
2022 (2개소)	강원 평창	24,014	59.0	2,668	11.1	이효석박물관 225건
	충북 옥천	17,443	35.4	3,127	17.9	수생식물학습원 2,040건
합계		41,457	46.1	5,795	14.0	

주: 2022.9.30.~12.31.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년 사업은 8월말 기준으로, 2022년 선정지 2개소의 경우 8개월(2023.1.1.~8.31.) 동안 운영되었고 2023년 선정지 9개소는 대상지 선정 및 시스템 반영 기간 소요로 3개월(2023.5.30.~8.31.) 동안 운영되었다.

○ 2023년 사업 실적은, 운영기간이 비교적 긴 2022년 선정지 2개소에서 각각 2만여명이 주민증을 발급받았고, 주민증 발급자 수 대비 업체 이용 건수 비율은 22~ 23%, 이용 건수는 4,000~6,000여건으로 나타났다.

○ 2023년에 선정된 강화 등 9개소에서도 개소별로 1만여명이 주민증을 발급받았으나 주민증 발급자 수 대비 업체 이용 건수 비율은 7개소에서 10% 미만으로 나타났고, 이용 건수 기준으로 단양은 1,705건인 반면 신안은 260건으로 개소당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23년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발급 및 이용 현황(11개소)]

(단위: 명, 건, %)

구분		발급		이용		
최초선정	지자체	발급자수	인구 대비 비율	이용건수	발급자수 대비 비율	주요 이용처
2022 (2개소)	강원 평창	27,405	67.3	6,442	23.4	이효석박물관3,242건
	충북 옥천	21,885	44.4	4,973	22.7	수생식물학습원 5,507건
2023 (9개소)	인천 강화	11,674	16.8	593	**5.1**	강화씨사이드리조트 30건
	경북 고령	11,840	39.1	728	**6.1**	대가야생활촌 514건
	전북 고창	10,520	20.2	371	**3.5**	운곡람사르습지 158건
	충남 태안	11,420	18.7	332	**2.9**	밀리앤코(카페) 94건
	부산 영도	13,316	12.4	471	**3.5**	라발스 호텔 66건
	강원 정선	14,263	41.2	1,612	11.3	가리왕산케이블카 713건
	전남 신안	11,196	29.4	260	**2.3**	라마다호텔프라자 91건
	충북 단양	16,292	58.8	1,705	10.5	다누리아쿠아리움 993건
	경남 거창	12,241	20.3	690	**5.6**	거창수승대 117건
합계		162,052	28.4	18,177	11.2	

주: 2022년 선정 2개소(평창, 옥천)는 '23.1.1.~8.31. 기준, 2023년 선정 9개소(강화 등)는 '23.5.31~8.31.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에서 매년 신규로 지자체를 선정하되 기존에 선정된 지자체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2개소, 2023년 1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 것에 이어 2024년에 2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그러나 사업 대상 지자체 수를 확대하여 운영 중인 2023년 사업에서 지자체 이용 실적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2023년에 신규로 선정된 지자체는 8월말 기준으로 운영 기간이 짧아 사업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 대상 지자체 수의 확대는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도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계획안에 방문자 혜택 지원 예산 10억원을 지역별 핵심 혜택 발굴 및 지원 등 여러 내용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방문자 혜택 지원은 각 지자체의 관광 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와 지역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되 이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예산은 6억원이 계획되었으나,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기능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실제 소요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반영될 필요가 있다.

[2024년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중 방문자 혜택 지원 등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계획안
방문자 혜택 지원	· 40개 지역 할인혜택 지원 700백만원(17.5백만×40개) - 지역별 핵심혜택 발굴 및 지원 - 구심점 역할 시설·업체 참여지원, 할인 보조 - 지역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 지역행사(축제 등), 관광프로그램 연계 혜택 다양화	1,000
	· 우수 방문객 관리 강화 300백만원 - 주요 혜택지 및 관광체험 추가 할인 제공(50백만×5회) 250백만원 - 인기관광지 팸투어 진행(20백만×2회) 40백만원 - 방문자 맞춤 지역 정보(혜택 등) 제공(10백만원) 10백만원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고도화 350백만원 - 참여 지자체 확대(40개소) 시스템 반영 100백만원 - 온라인 서비스 화면 UI/UX 개선 50백만원 - 카드사 연계(삼성·네이퍼 페이 포함)를 통한 결제 기능 개발 200백만원	600
	· 시스템 기능 개선 250백만원 - 혜택제공 이력 관리, 통계분석 등 관리자 기능 개선 100백만원 - 공공, 민간 시스템 연계 및 기타 기능 개발/개선 100백만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V.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참고자료

1. [지방자치 이슈] 악성 민원 대응 관련 동향 ('24. 3. 8./나라살림연구소)

1. 현황

□ **감정노동 상태 심각, 대응책 시급**

○ **응답자 84%가 악성민원 경험**

-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국가공무원 1만 98명 대상, '23.12.)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단계로 나타나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조사 결과에서 폭언·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참아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46%에 달하고,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질병이 발현되는 경우에도 10명 중 6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였음
- 감정노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기관 차원의 적극적 보호(경고장, 법적조치 등)라는 응답이 응답자 3분의 2 정도인 65.4%로 가장 많아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한 공무원노조단체의 설문조사(7천여명 참여)에 의하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내 악성 민원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88%가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등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정부 동향

□ **기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노력 중**

○ **고용부, 교육부**

- **고용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출범, 민원인의 악의적 고발에 대해 기관 차원의 법률지원을 제공해,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음
- 올해는 불법행위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 강화유리·CCTV·비상벨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
- **교육부**는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함. 교원 개인이 아닌 교내·교육청 민원대응팀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 법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

- '교원지위법' 개정(3.28 시행)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악의적 민원은 학교 차원에서 답변 거부가 가능해질 예정임
-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3월 8일에 범부처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함. TF 팀에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 중

3. 지자체 동향

□ **악성민원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

○ **김포시**

-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 공무원은 포트홀로 인한 도로 보수 공사와 관련한 항의 민원에 시달리고, 온라인에서의 '신상털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짐. 김포시는 진상조사와 함께 누리꾼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 **인천시**

- 지난해 특정 민원인이 1,44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일부 민원인이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함
- 시의회에서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오남용으로 공무원이 고충을 겪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함
- 시의회에서는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민원처리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운영 중임

○ **웨어러블캠 운영 및 충주시의 고지의무 폐지**

-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촬영 장치인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을 도입·운영 중임
- 한편, 충북 충주시에서는 캠 사용을 고지하는 경우 민원인을 자극해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해 '고지 의무'를 폐지하도록 관련 운영 지침을 개정함(3.8부터 시행)

○ **경기도**

-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직접 착용하여 촬영 실습을 하는 사용자 교육 훈련 실시

〈참고〉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요약)

□ 감정노동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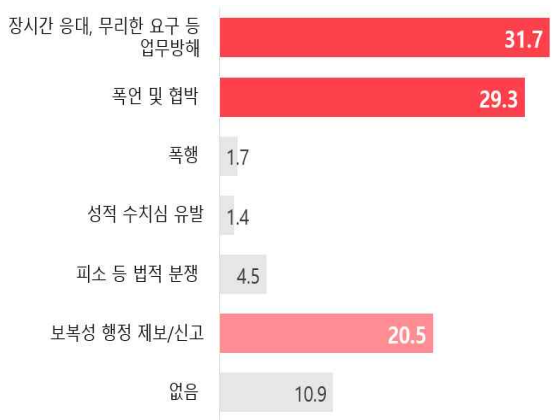
구 분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모니터링	보호체계
여성	조사 결과	6.7	10.1	6.4	12.1
	평가 기준	(정상) 2~6 (위험) 7~8	(정상) 3~7 (위험) 8~12	(정상) 2~5 (위험) 6~8	(정상) 4~8 (위험) 9~16
남성	조사 결과	6.4	9.4	6.1	11.1
	평가 기준	(정상) 2~5 (위험) 6~8	(정상) 3~6 (위험) 7~12	(정상) 2~4 (위험) 5~8	(정상) 4~8 (위험) 9~16

※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노출강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 감정노동 양태

○ **(감정노동 원인)**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 방해**(1위, 31.7%), **폭언·협박**(2위, 29.3%), **보복성 행정 제보/신고**(3위 20.5%) 등

보 기	비율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 등 업무방해	31.7%
폭언 및 협박	29.3%
폭행	1.7%
성희롱 등 성적수치심 유발	1.4%
피소 등 법적 분쟁	4.5%
보복성 행정 제보/신고	20.5%
특별히 없음	10.9%
합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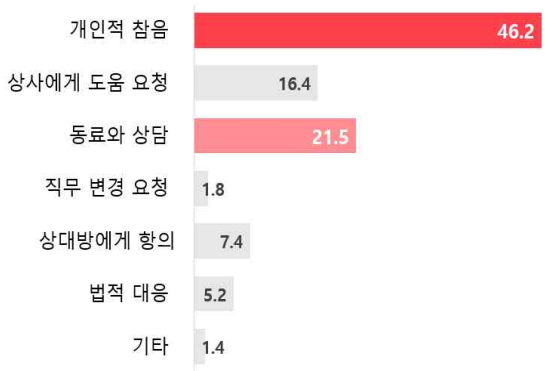
○ **(감정노동 영향)**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1위, 33.5%),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위, 27.1%) 등

보기	비율
이직 의향 높아짐	13.2%
직무변경 의향 높아짐	17.0%
동료직원 등 대면 어려움	5.2%
직무스트레스 증가, 자존감 하락	33.5%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	27.1%
거의 영향 없음	3.9%
합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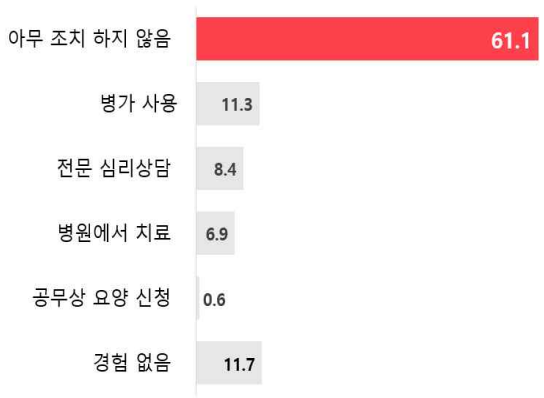
○ **(대응 방법) 개인적으로 참음**(1위, 46.2%), **주변 동료와 상담**(2위, 21.5%) 등

보기	비율
개인적으로 참음	46.2%
상사에게 도움 요청	16.4%
주변 동료와 상담	21.5%
직무 변경 요청	1.8%
상대방에게 항의	7.4%
소송 등 대응 강구	5.2%
기타	1.4%
합 계	**100.0%**



○ **(신체/심리적 질병 대응)** 아무 조치 않거나(1위, 61.1%), 병가 사용(2위, 11.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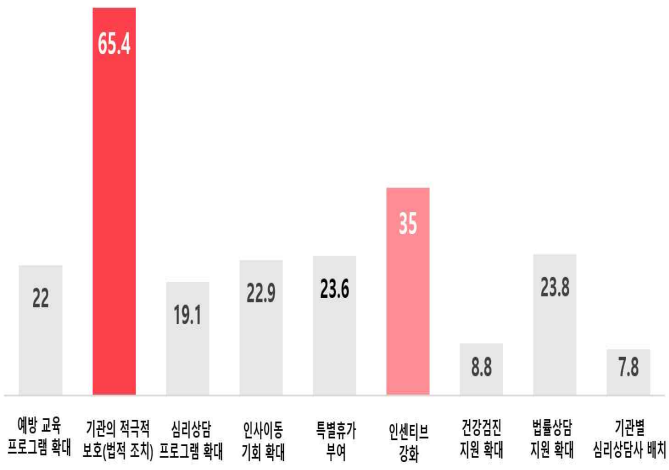
보기	비율
아무 조치 하지 않음	61.1%
병가 사용	11.3%
전문 심리상담	8.4%
병원에서 치료	6.9%
공무상 요양 신청	0.6%
질병 경험 없음	11.7%
합 계	**100.0%**



□ 감정노동 정책 및 제도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제도) 기관의 적극 보호**(1위, 65.4%), **인센티브 강화**(2위, 35.0%), 법률상담 지원 확대(3위, 23.8%) 등(복수응답)

보기	비율
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대	21.5%
기관 차원의 적극적 보호 (경고장, 법적 조치 등)	65.4%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18.7%
인사이동 기회 확대	22.8%
감정노동 후 특별휴가 부여	23.3%
민원수당, 성과평가 등 인센티브 강화	35.0%
건강검진 지원 확대	9.1%
법률상담 지원 확대	23.8%
기관별 심리상담사 배치	7.7%



2. 2023 공직생활 실태조사 ('24. 3.15. / 한국행정연구원)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및 개요

○ 본 조사는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인식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향후 정부의 전략적 인사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 개요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
- 조사주기: 매년(1년 주기)
- 조사기관: 한국행정연구원(*조사실시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대상: 47개 중앙행정기관 본청(752명), 17개 광역자치단체 본청(1천 586명), 226개 기초자치단체 본청(4천 106명) 소속 일반직 공무원
- 조사방법: 확률표본 수집 후 E-mail 웹조사

2. 조사결과 분석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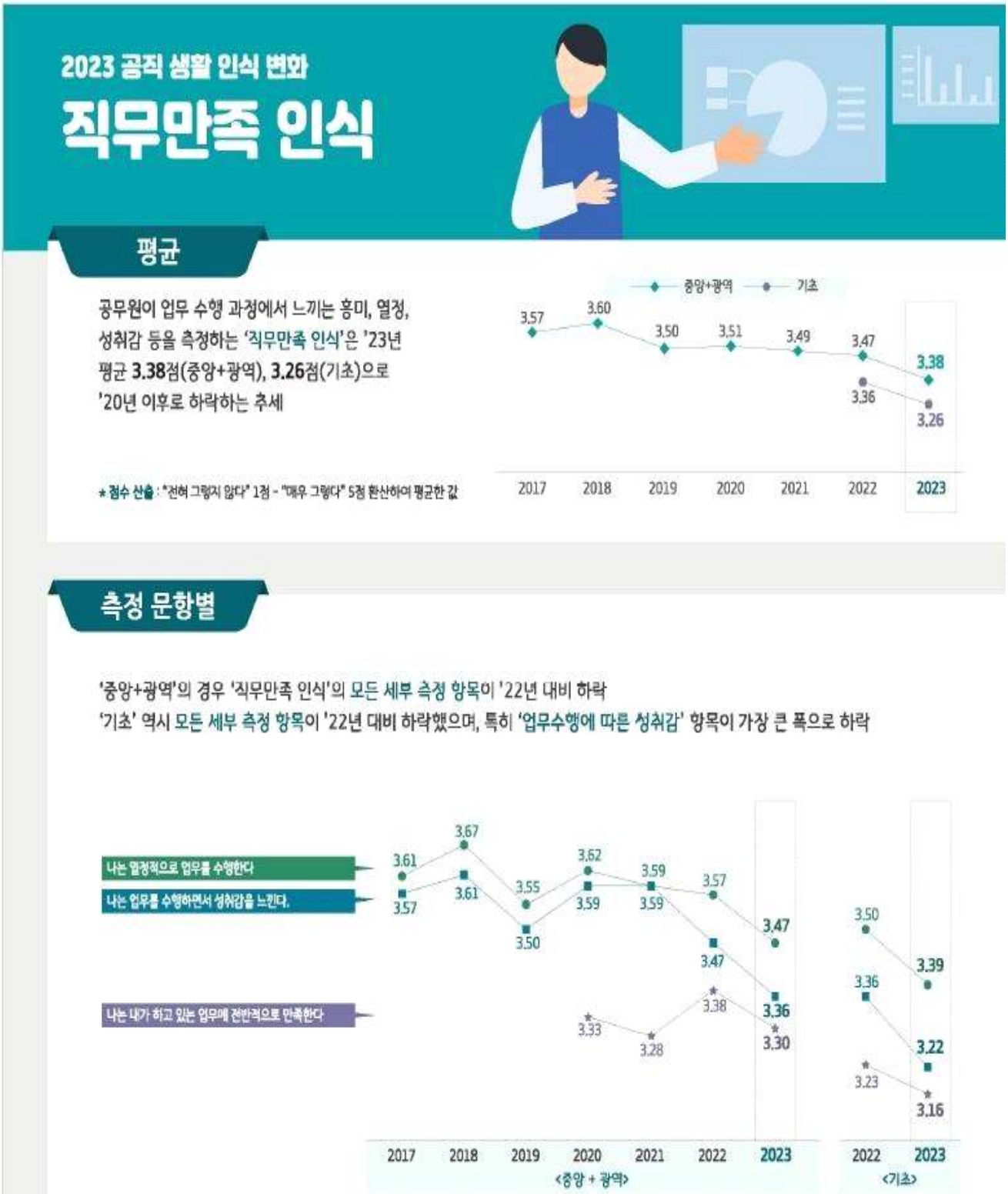
○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

- 첫째,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인기 저하 현상과 공직을 통한 '사회적 헌신의지'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지표인 '조직몰입 인식', '공직 가치 인식', '공직 만족 인식' 등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주요 지표들이 하락세**를 이어감
- 둘째, 중앙 및 광역 단체 공무원과 비교하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조직목표 내재화', '역량 및 전문성 인식', '조직몰입 및 공직가치인식'이 낮게 나타남. **기초자치단체(4천106명) 공무원의 '직무만족 인식' 점수는 3.26점(5점 만점)**으로, 중앙·광역 단체 공무원의 점수 3.38점보다 낮음
- 셋째, **직급이 낮을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특히 '직무 스트레스' 인식이 매년 오르고** 있어, 공직자로서의 사기와 역량 제고의 측면에서 인적자원관리 및 처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 2023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요약)

※ 자세한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직무만족 인식조사 결과



□ 공직가치 인식조사 결과



평균

시민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설득의 적극성, 윤리와 규범 준수 등을 측정하는 '공직가치 인식'은 '23년 평균 **3.62**점(중앙+광역), **3.56**점(기초)으로 '22년 대비 하락

★ 점수 산출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환산하여 평균한 값



측정 문항별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공직가치 인식'의 모든 세부 측정 항목이 '22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조직과 정책의 목표 달성을 중요시함'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세부 측정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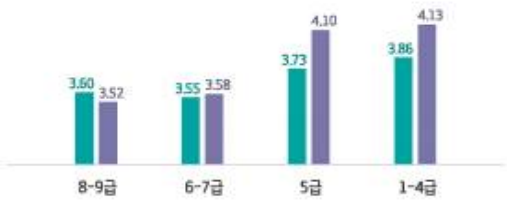


재직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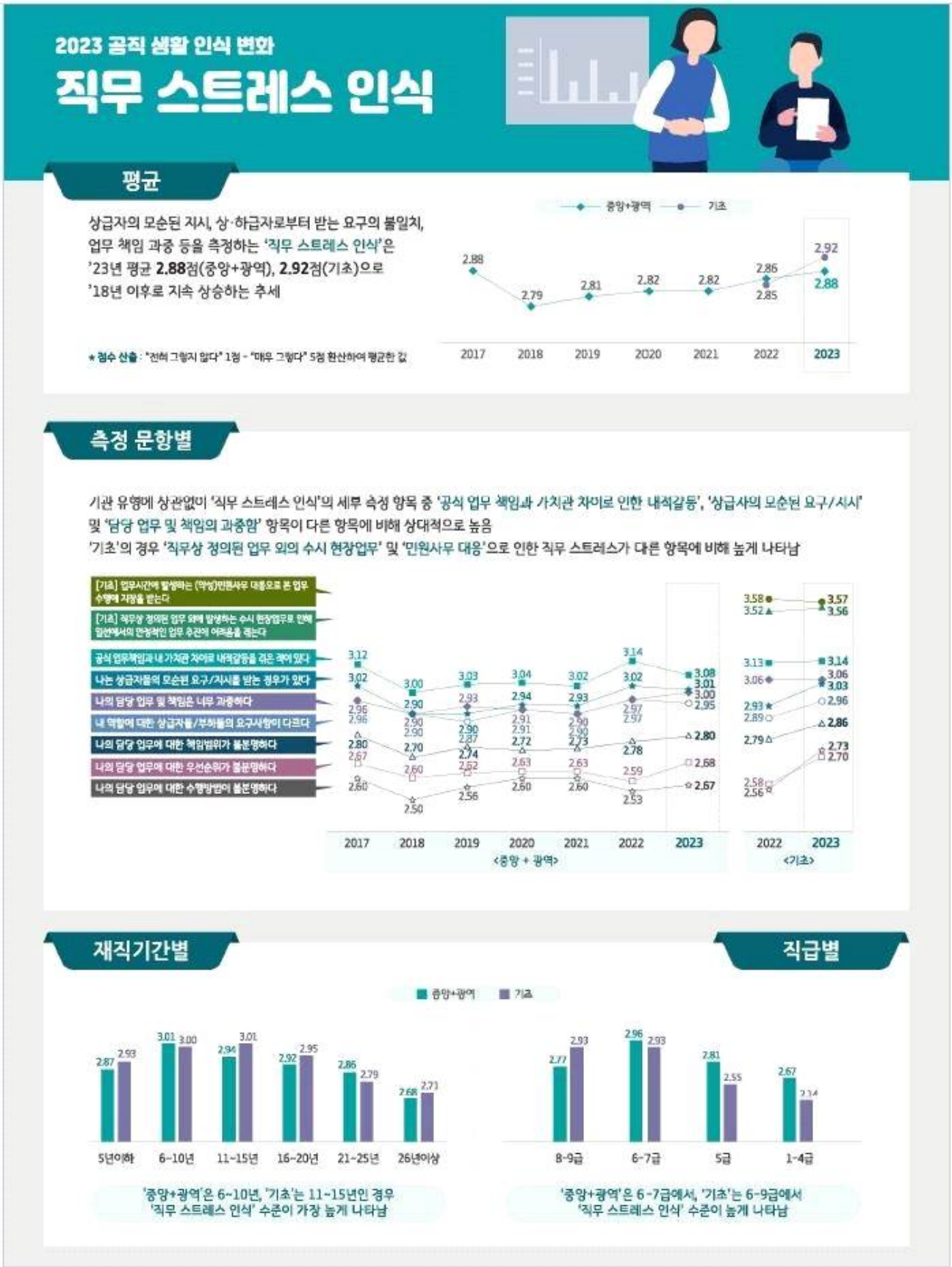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재직기간 6~10년인 경우 '공직가치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직급별



'중앙+광역'은 6-7급에서, '기초'는 8-9급에서 '공직가치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직무 스트레스 인식조사 결과




의회